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 안내서



성폭력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법적 구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은 성폭력피해자들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합니다. 법은 잘 활용되면 성폭력피해자를 처벌하고 성폭력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폭력피해자에게 법은 너무나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성폭력 피해 신고율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성폭력상담소의 주된 활동 중의 하나가 법에 낯선 피해자들을 안내하는 조력자 역할입니다. 성폭력상담소의 활동가들은 성폭력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잘 진행하고 법률에 규정된 피해자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함께 형사사법 절차의 긴 과정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나 무료법률구조와 같은 지원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의 최근거리에서 든든한 지원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은 법률지원 안내서는 성폭력상담소 활동에 매우 요긴한 것입니다. 특히 성폭력 관련법의 잦은 개정으로 변화된 내용을 신속하게 알아차리기 힘들어 최신의 법률 내용을 담은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소리가 컸습니다.

이에 각 성폭력상담소에서 발간했던 내용을 고르고 보완하여 본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자를 지원한 경험을 토대로 법적 문제 해결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성폭력사건의 법적 절차와 권리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집필하였으며, 민사적 대응 및 가사소송은 한국성폭력위기센터가 집필했습니다. 기꺼이 저작권을 포기해주신 상담소에 감사드립니다.

본 안내서에는 성폭력의 개념과 성폭력범죄의 유형,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에서부터 형사, 민사 및 가사대응, 비사법적 절차 등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에서 꼭 알아야 할 법률용어와 개념, 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를 세부적으로 살펴 성폭력피해자 지원 시 활용하거나 연계할 만한 지원제도도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주여성, 아동, 북한이탈여성, 군인, 장애인, 성소수자 등 성폭력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지원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지원기관을 소개하여 성폭력피해자의 보편성 속에서 특수성도 놓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리해두었습니다.

본 안내서 각 장의 끝에 Q & A를 배치했습니다. 본문 내용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자 지원 시 흔히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을 담아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부록으로 색인, 각종 서식, 전국의 성폭력상담소 및 지원기관의 주소록을 실었습니다.

집필에 참여한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의 양애리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최란, 방이슬,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이경란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분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본 안내서는 묶여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작을 위해 수고해주신 전국성폭력상담소의 김미순 상임대표,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배복주, 한국성폭력상담소 백미순,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조중신 소장, 발간 예산을 지원해주신 여성가족부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안내서의 초벌 완성을 위해 수고해주셨던 강이현, 김승민, 임혜진, 장윤정님과 조인섭, 장윤정 변호사, 그리고 안내서를 감수해주신 김영미, 김차연, 천지선, 차혜령 변호사, 김정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피해자 특성에 따른 지원체계를 집필 해주신 이주여성인권센터의 허오영숙님과 장애여성공감의 나영정님, 도움을 주신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의 최영애 대표, 장윤경님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내서가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에서 수시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회복을 위해 법,제도적 방법을 모색하는 성폭력피해자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안내서를 활용하면서 발견되는 부족한 내용은 다음의 개정판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없는 세상을 꿈꾸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Contents

1장 성폭력의 개념 및 대응

1. 성폭력의 의미 · 010

- (1) 성폭력이란
- (2) 성폭력의 유형
- (3) 성폭력범죄 구성요건과 법률용어의 이해

2. 성폭력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방법 · 023

Q & A(01~11) · 024

2장 수사재판절차의 이해: 수사단계

1. 신고 전 단계 · 031

- (1) 증거와 증인 확보하기

2. 수사절차 · 033

- (1) 수사의 개시
- (2) 경찰조사단계
- (3) 경찰수사 종결
- (4) 검찰수사
- (5)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

Q & A(12~18) · 045

3장 수사 · 재판절차의 이해: 재판단계

1. 재판단계 · 051

- (1) 재판단계란
- (2) 약식명령
- (3) 항소와 상고

2. 형사재판 판결의 종류 · 052

- (1) 유죄판결
- (2) 무죄판결
- (3) 배상명령

3. 그 외 가해자 처벌제도 · 053

-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 (2) 전자장치 부착명령
- (3) 성충동 약물치료
- (4)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 (5) 취업제한제도
- (6) 접근금지가처분

4. 국민참여재판제도 · 055

5. 소년보호재판 · 056

6. 군사재판 · 056

Q & A(19~29) · 057

4장 기타

1. 역고소 · 062

- (1) 무고죄
- (2) 명예훼손죄

2. 공탁 · 062

3. 국가배상청구 · 063

Q & A(30~32) · 064

5장 민사 및 가사 대응

I. 민사적 대응

1. 민사소송의 이해 · 068

- (1) 소송의 개요
- (2) 민사재판 기간
- (3) 증거 및 피해자의 출석
- (4) 소멸시효

- (5) 관할법원
- (6) 비용
- (7) 소송 중 조정
- (8) 소송비용 확정신청

2. 손해배상청구 · 071

3. 재산보전조치 · 073

4. 화해권고결정 · 074

- (1) 이의신청
- (2) 조정과 화해권고결정의 차이
- (3) 이행권고결정

II. 가사소송

1. 이혼소송 · 075

2. 협의이혼 · 077

3. 친권상실청구 · 078

4.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 078

5. 개명허가신청 · 078

Q & A(33~48) · 079

6장 다양한 대응

1. 개인적 해결 · 086

- (1) 내용증명
- (2) 합의

2. 기타대응 · 088

- (1) 학내성폭력
- (2) 직장 내 성희롱

Q & A(49) · 091

7장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1. 성폭력피해자의 권리 · 099

- (1) 수사재판단계
- (2) 재판의 증인진술 단계
- (3) 재판 이후 단계

2. 성폭력피해자 지원제도 · 107

- (1) 의료비지원
- (2) 주거지원
- (3) 긴급복지지원
- (4) 범죄피해구조금
- (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쉼터)

Q & A(50) · 111

제 8장 피해자 특성에 따른 지원

I. 이주여성 · 114

II. 아동 · 117

III. 북한이탈여성 · 119

IV. 군인 · 122

V. 장애인 · 125

VI. 성소수자 · 129

※ 색인 · 134

※ Q&A 목차 · 136

※ 참고 서식 · 138

※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 162

1장

성폭력의 개념 및 대응

I. 성폭력 개념 및 대응

1. 성폭력의 의미

1)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폭력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폭력피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은 성폭력관련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및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과 같이 민사적 대응 또는 비사법적 절차로 권리가 구제되는 유형도 포함됩니다.

성폭력에 관한 주요 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군형법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피해자의 특징(생년월일, 장애여부)과 범행의 일시, 장소, 가해자의 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협의 수단 등을 고려합니다.

2) 성폭력의 유형

●● 강간 (형법 제297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성기삽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간 피해자를 '부녀'로 한정하다가 남자 청소년까지 확대하고(청소년성보호법 2012.3.16. 시행), 이후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2013.6.19. 시행)

※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은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을 한 일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밀치거나 꺾꽂 못하게 누르는 행위, 원력으로 옷을 벗기는 행위,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 처럼 행동하는 것 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형법 제305조),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 행위 장소가 공중밀집장소인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 2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2013.6.19. 시행)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로 폭행하는 행위 자체가 추행하는 행위인 경우도 포함되며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 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 299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심신상실이란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2013. 6. 19. 시행)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

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41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 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신 및 사이버 상 괴롭힘, 불시침입, 소문유포, 폭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및 유포, 자해, 협박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다른 범죄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여성발전기본법 (2015. 7.1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령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혼인빙자간음죄(형법 제304조)는 2012.12.18. 위헌판결을 받아 삭제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 구성요건과 법률용어의 이해

(1) 강간 · 유사강간

구분	조문	죄명	형량	수단	행위자	대상	행위
형법	297조 ¹	강간	3년이상	폭행·협박	사람	사람	간음
	297조 의2 ²	유사강간	2년이상	폭행·협박	사람	사람	유사간음
	301조 ³	강간 등 상해·치상	무기 또는 5년이상	297조부터 300조의 행위수단	297조부터 300조의 죄를 범한 사람	사람	간음 등 상해
	301조 의2 ⁴	간음 등 살인·치사	사형 또는 무기 (무기 또는 10년 이상)	297조부터 300조의 행위수단)	297조부터 300조를 범한 사람	사람	간음 등 살해,치사
	339조 ⁵	강도강간	무기 또는 10년이상	폭행·협박	강도	사람	재물강취, 간음
	305조 ⁶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의제강간)	3년이상	-	사람	만13세 미만의 사람	간음
군형법	92조 ⁷	강간	5년이상	폭행·협박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사람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사람	간음
	92조 의2 ⁸	유사강간	3년이상	폭행·협박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사람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사람	유사간음
성폭력 처벌법	4조 ⁹	특수강간	무기 또는 5년이상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사람	사람	간음
	5조 ¹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7년이상	폭행·협박	사람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	간음
	7조 ¹¹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무기 또는 10년이상	폭행·협박	사람	만13세 미만의 사람	간음
	7조 ¹²	13세미만 미성년자에 유사강간	7년이상	폭행·협박	사람	만13세 미만의 사람	유사간음
	8조 ¹³	강간 등 상해·치상	무기 또는 10년이상 (무기 또는 7년이상)	3조의항, 4조 7조의 행위수단 (5조)	3조의1항, 4조(5조) 7조의 죄를 범한 사람	사람	간음 등 상해
	9조 ¹⁴	강간 등 살인·치사	사형 또는 무기 (무기 또는 10년이상)	3조부터 7조의 행위수단	3조부터 7조의 죄를 범한 사람	사람	간음 등 살해,치사

청소년 성보호법	7조① ¹⁵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무기 또는 5년이상	폭행·협박	사람	만19세 미만의 사람	간음
	7조② ¹⁶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5년이상	폭행·협박	사람	만19세 미만의 사람	유사간음

-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 297조의, 제 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군형법 제92조 (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군형법 제92조의2 (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4조 (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성폭력처벌법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2) 강제추행

구분	조문	죄명	형량	수단	행위자	대상	행위
형법	298조 ¹⁷	강제추행	10년이하,15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협박	사람	사람	추행
	305조 ¹⁸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10년이하,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	만13세 미만의 사람	유사간음
군형법	92조의 ¹⁹	강제추행	1년이상	폭행·협박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사람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사람	추행
성폭력 처벌법	4조 ²⁰	특수강제추행	3년이상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사람	사람	추행
	5조 ²¹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5년이상	폭행·협박	사람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	추행
	5조 ²¹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의제강간)	3년이상	-	사람	만13세 미만의 사람	추행
	7조 ²²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5년이상,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 벌금	폭행·협박	사람	만13세 미만의 사람	추행
	11조 ²³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1년이하,3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	사람	추행
	청소년 성보호법	7조 ²⁴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	2년이상, 1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협박	사람	만19세 미만의 사람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4조 (특수강간 등)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준강간 · 준강제추행

구분	조문	죄명	형량	수단	행위자	대상	행위
형법	299조 ²⁵	준강간	3년이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사람	사람	간음
		준유사강간	2년이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사람	사람	유사 간음
		준강제추행	10년이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사람	사람	추행
군형법	92조 의4 ²⁶	준강간 준강제추행	10년이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사람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사람	간음, 추행
성폭력 처벌법	4조 ³ ²⁷	특수 준강간	무기, 5년이상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사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사람	간음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7년이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사람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	간음
	5조 ³ ²⁸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5년이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사람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	추행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	무기, 10년이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사람	만13세 미만의 사람	간음
	7조 ⁴ ²⁹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유사강간	7년이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사람	만13세 미만의 사람	유사 간음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5년이상, 3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사람	만13세 미만의 사람	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무기, 5년이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사람	만19세 미만의 사람	간음
청소년 성보호법	7조 ⁴ ³⁰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강간	5년이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사람	만19세 미만의 사람	유사 간음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	2년이상, 1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사람	만19세 미만의 사람	추행

25.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6. 군형법 제92조의4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4) 위계 · 위력에 의한 간음 · 추행

구분	조문	죄명	형량	수단	행위자	대상	행위
형법	302조 ³¹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추행	5년이하	위계, 위력	사람	미성년자 (만19세 미만), 심신미약자	간음/추행
	303조 ① ³²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5년이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계, 위력	사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	간음
	303조 ② ³³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7년이하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	간음
성폭력 처벌법	7조 ⁵ ³⁴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무기, 10년이상	위계, 위력	사람	만13세 미만의 사람	간음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 위력에 의한 유사간음	7년이상	위계, 위력	사람	만13세 미만의 사람	유사 간음
	10조 ¹ ³⁵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 위력에 의한 유사간음	5년이상,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 벌금	위계, 위력	사람	만13세 미만의 사람	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2년이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계, 위력	사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	추행
	10조 ² ³⁶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2년이상,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계, 위력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	추행
		7조 ⁵ ³⁷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무기, 5년이상	위계, 위력	사람	만19세 미만의 사람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 위력에 의한 유사간음	5년이상		위계, 위력	사람	만19세 미만의 사람	유사 간음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	2년이상,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계, 위력	사람	만19세 미만의 사람	추행	

27. 성폭력처벌법 제4조 (특수강간 등) ③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8. 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③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9. 성폭력처벌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④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30.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④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31.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구분	조문	죄명	형량	수단	행위자	대상	행위
성폭력 처벌법	6조① ³⁸	장애인에 대한 강간	무기, 7년이상	폭행·협박	사람	신체적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간음
	6조② ³⁹	장애인에 대한 유사강간	5년이상	폭행·협박	사람	신체적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유사 간음
	6조③ ⁴⁰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3년이상,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협박	사람	신체적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추행
	6조④ ⁴¹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무기, 7년이상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	사람	신체적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간음
		장애인에 대한 준유사강간	5년이상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	사람	신체적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유사 간음
		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3년이상,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	사람	신체적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추행
	6조⑤ ⁴²	장애인에 대한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5년이상	위계, 위력	사람	신체적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간음
	6조⑥ ⁴³	장애인에 대한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	1년이상,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계, 위력	사람	신체적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추행
6조⑦ ⁴⁴	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	간음/ 유사간음/ 추행	
청소년 성보호법	8조① ⁴⁵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3년이상	-	만19세 이상의 사람	만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	추행/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함
	8조② ⁴⁶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 등	10년이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만19세 이상의 사람	만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	추행/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함

32.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3.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4. 성폭력처벌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⑤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35.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②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7.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⑤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6)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등

구분	조문	죄명	형량	목적	수단	행위
형법	제242조 ⁴⁷	음행매개	3년이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영리	무관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함
	제243조 ⁴⁸	음화반포 등	1년이하, 500만원 이하 벌금	무관	무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함
	제244조 ⁴⁹	음화제조 등	1년이하, 500만원 이하 벌금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	무관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함
	제245조 ⁵⁰	공연음란	1년이하, 500만원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무관	무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
	12조 ⁵¹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1년이하, 300만원 이하 벌금	성적 욕망 만족	공중화장실, 목욕장 등에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 함
성폭력 처벌법	13조 ⁵²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2년이하, 500만원 이하 벌금	성적욕망 유발 또는 만족	통신매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말,글,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함
	14조① ⁵³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년이하 1천만원 이하벌금	성적욕망 유발 또는 만족	카메라 등 기계장치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14조②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3년이하 500만원 이하벌금	성적욕망 유발 또는 만족	카메라 등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14조③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년이하 3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정보통신망	14조 1항의 촬영물의 유포
청소년 성보호법	11조① ⁵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무기또는 5년이상	무관	무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11조②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10년이하	영리	무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11조③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7년이하 5천만원 이하벌금	무관	무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11조④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3년이상	무관	무관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
	11조⑤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	1년이하 2천만원 이하 벌금	무관	무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38. 성폭력처벌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성매수, 성매매 강요 등

구분	조문	죄명	형량	목적	수단	행위
청소년 성보호법	12조 ⁵⁶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무기, 5년이상	-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
	13조 ^① ₅₆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1년이상 10년이하, 2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13조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1년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	-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 권유
	14조 ⁵⁷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5년이상	폭행,협박 선불금 등 채무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강요
	15조 ⁵⁸	알선영업 행위 등	7년이상	무관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및 매수 장소제공 등

39. 성폭력처벌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②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40. 성폭력처벌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1. 성폭력처벌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④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42. 성폭력처벌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⑤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3. 성폭력처벌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⑥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4. 성폭력처벌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⑦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45.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6.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②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7. 제242조(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8. 제243조(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9.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1.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2.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3.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4.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⑤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5.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56.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7.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58.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 ③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법률용어의 이해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 형법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범행 당시 나이)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처벌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라고 합니다.
- **친족** :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친족을 말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사실상의 친족이라 함은 자연혈족의 관계에 있으나 법정 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존속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 또는 법정 혈족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 등 법률이 정하는 실질 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신고 등 법정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존속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사실상의 양부와 양녀의 관계)가 이에 속하며 중혼적 사실혼을 비롯한 모든 사실혼을 포함합니다.
- **흥기, 위험한 물건** : 사람의 살상 또는 재물의 손괴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물건으로 일반적으로 흥기로 여겨지지 않는 물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범죄자가 흥기 등을 이용하여 강간,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 **위계** :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합니다. 진료하는 것처럼 속여서 간음하는 경우는 위계에 해당하나,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는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해 착오에 빠진 것은 아니므로 위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위력** :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힘을 말합니다. 폭행, 협박은 물론 지위, 권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직장 상사가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해고시킬 것처럼 협박하여 부하 직원을 강간, 강제추행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심신미약자** : '정신기능의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자'를 말하며, 그 연령은 묻지 않습니다.
- **항거불능 및 항거곤란** : 항거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함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의 법원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매우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정신상 장애인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1도6907) 처럼 피해 당시에 피해자의 실제적인 항거가능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보다 다각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많은 성폭력 사건의 재판에서 피해자의 항거능력이나 거부정도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 성폭력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방법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대응은 크게 형사적 대응과 민사적 대응이 있습니다. 형사적 대응은 가해자를 고소하여 수사하고 재판을 받게 하여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대응입니다. 민사적 대응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재산상 피해(치료비 등)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절차, 즉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대응입니다.

형사소송은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고소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를 거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법원에 요구하는 과정으로,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주체로 직접 재판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 자격으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죄를 밝혀 구형을 하는 것은 검사의 몫이고,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가해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므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동등하게 소송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과는 달리 피해자가 직접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피해를 입증하고 불법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하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하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선고되어도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반드시 형사소송에서 가해자가 유죄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형사적 대응과 민사적 대응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해결방법, 학교의 학칙이나 회사의 사칙, 교육부나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해결방법도 있으며, 성폭력의 유형에 따라서는 이러한 비사법적 구제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 대응방법을 살펴본 뒤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유형과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 주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1. 부부강간을 처벌할 수 있나요? [부부강간]

》》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과정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13.5.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지금까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만 배우자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해온 것에 비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Q2. 가해자로부터 도망치다가 다친 경우, 강간치상인가요? [강간치상]

》》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도 강간치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치상은 직접적인 고의성 없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입니다. 강간치상은 질조직의 상처, 성병감염, 생식기 주위의 찰과상, 타박상, 열창과 같은 육체적인 상해와 수면장애, 식욕감퇴, 우울증, 히스테리 등과 같은 정신적 상해 등을 말하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도 치상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상해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단서를 통해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일이 지나기 전에 병원에 진단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으며 특히 아동은 상처가 금방 아무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 즉시 병원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손이 약간 찢어지거나 가해자가 빨아서 난 상처, 1주일 정도면 나올 수 있는 멍이나 타박상, 상해 부위가 성기와 가깝지 않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해, 치료가 필요 없는 상해의 경우에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 편이며 일반적인 상해 개념보다 다소 엄격하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Q3. 실제로 강간을 하지 않았지만 모의한 사람도 처벌 가능한가요?

》》 형법에서는 모의만 하고 현장에 없었던 경우에도 공동정범⁵⁹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모의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어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추행 또는 간음 등의 목적으로

59.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범죄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기능을 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참가하는 전원이 범죄의 주도자가 되는 범죄 형태를 말합니다.

약취, 유인, 매매하거나 그런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형법상 약취와 유인의 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강간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함께 폭행하거나 위협한 경우, 피해자의 팔 등을 잡고 범행을 도운 경우, 방 밖이나 근처에서 망을 봐준 경우 등은 함께 강간범행을 한 것으로 보아 특수강간(2인 이상이 범행한 경우)으로 처벌하는데, 현장에 같이 있으면 함께 범행을 한 것으로 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Q4. 신체접촉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인가요? [강제추행]

》》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일 경우에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칼로 위협하는 등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2009도13716 판결), "의도적으로 협소하고 폐쇄적인 엘리베이터 내 공간을 이용하여 피해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즉시 도피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놀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기까지 하는 유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위압감이나 불안감"을 준 행위(대법원 2013.1.16, 선고 2011도7164 판결)가 강제추행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 "신체접촉 없어도 강제 추행죄" 한겨레 2013.01.30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도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0일 밀폐된 엘리베이터에서 9살 여자 어린이가 보는 앞에서 자위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채아무개(29)씨에 대해 '위력을 이용한 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씨가 비록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뒤 피해자가 바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씨의 행위는 심리적 위압감과 불안감 등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Q5.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 처벌할 수 있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 성적 불쾌감이나 공포심,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이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내는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나 다만 문자나 메일 자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문구나 이미지가 있어야 하며 음란사이트 등으로 연결을 유도하는 경우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한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단, 공포심,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로 처벌되려면 '각각의 행위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성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이어지는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서 그 의도가 분명할 때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며, 반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Q6. 촬영할 때 동의했다면 동영상이 유포되었을 때 처벌할 수 없나요? [카메라이용촬영]

》》 처벌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한 경우, 촬영 당시 동의하였다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모두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피해자의 판단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찍히는 사람의 의사의 반하여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카메라이용촬영으로 처벌하기 어렵고, 초상권 침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7. 피해사실이 있는 후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고소하면 어떤 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피해사실이 있었던 때의 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부칙 제3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1조(공소시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2013년 6월 18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21조를 적용합니다.

한편,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제3자도 고소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고소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만일 비장애인 성인이 2013년 6월 18일에 피해가 있었다면 2014년 6월 18일까지는 고소가 가능하지만 2014년 6월 19일부터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Q8. 스토킹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지속적괴롭힘]

》》 스토킹은 현재 경범죄로 처벌되어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동반된 경우에는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

토킹 피해에 대해 사법적 해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적 폭행 외에 가해자가 보낸 이메일과 전화내역, 문자내용 등도 그 내용과 지속성에 따라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확보해야 하며, 경찰에 신고한 기록, 심정을 남긴 일기, 주변인에게 평소 스토킹의 괴로움을 호소한 정황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9. 가해자가 가해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장애인(준)강간이 성립하지 않나요?

》》 장애인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 또는 항거곤란 상태임을 몰랐다면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이때는 형법상의 강간죄 해당여부를 논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황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알았다고 인정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사가 가해자를 신문하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피해자의 장애 여부는 장애등록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자의 상태와 그로 인한 항거불능의 여부입니다.

Q10. 가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면, 가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2013.6.28.선고 2013도3793 판결). 그러나 검찰이 피해자의 객관적인 나이가 아닌 피해자의 외모 또는 피해자 나이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 여부를 공소요건으로 판단하는 경향 역시 남아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으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을 적용하여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Q11. 성폭력인지 의료행위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의료인성희롱]

》》 의료 기관 종사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진정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성적 언동 여부가 불명확하고 진료 목적이 인정되면 성희롱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행위 도중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도 환자에게 진료과정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환자의 동의를 미리 구하지 않은 것 자체로 성희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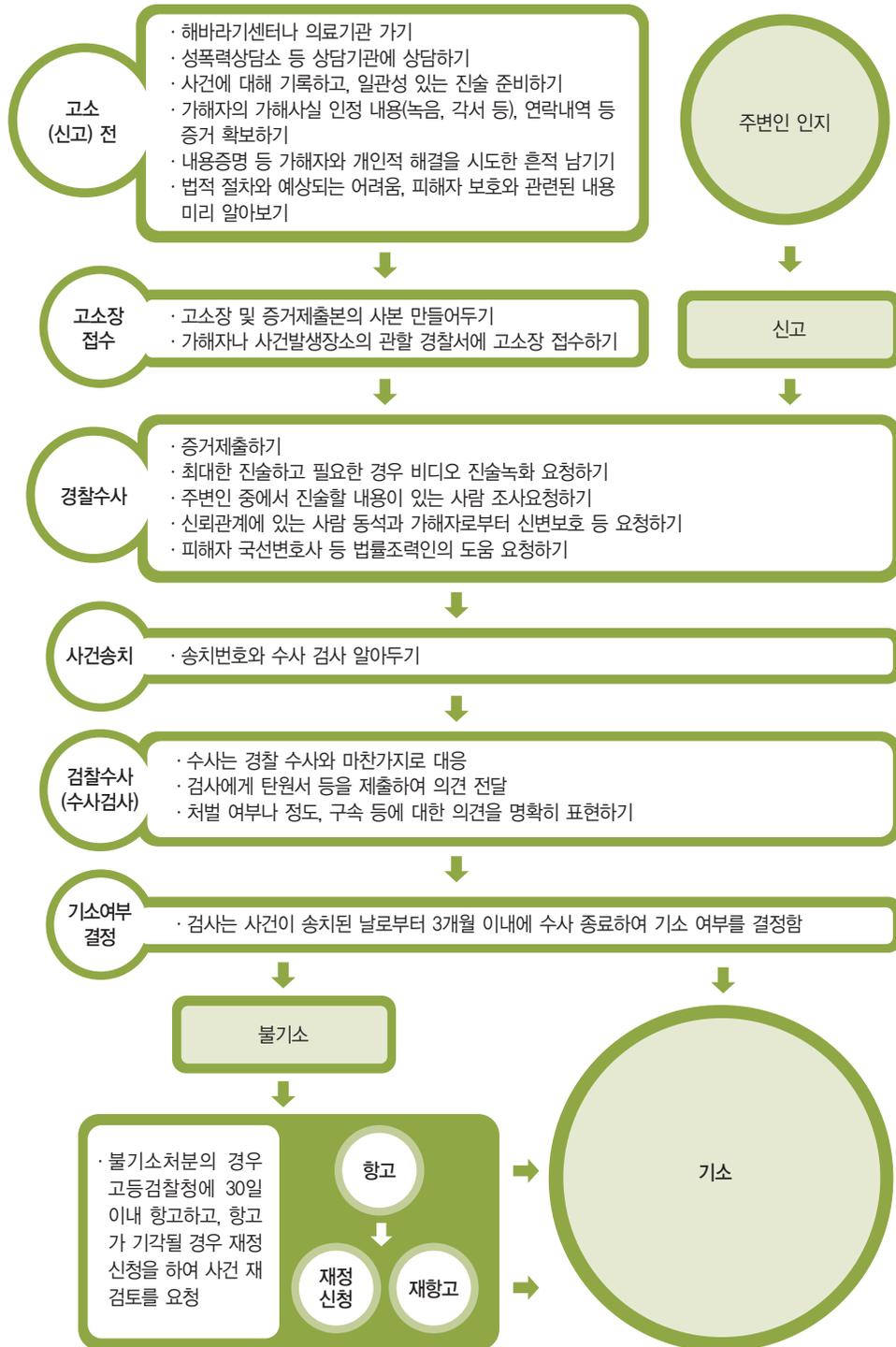
하지만 진료 목적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성적 함의가 있거나, 그 행위가 과도하고 불필요하여 진료 목적을 넘어선 점이 인정되면 성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행위를 가장한 성폭력은 업무상 위계에 의한 추행죄(의료행위인 것처럼 속이면서 추행을 하는 경우)나 준강제추행죄(마취를 시키거나 기타 방법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행하는 경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는 1년 이내의 면허자격 정지(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의료기사가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는 6개월 이내의 면허자격 정지가 가능합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자격의 정지), 제13조(의료기사 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

2장

수사·재판절차의 이해: 수사단계

수사절차도



I. 수사단계

수사단계란 신고 또는 고소를 통해 범죄를 인지한 수사기관이 피해자, 가해자, 참고인 등을 조사하고, 각종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과 이를 바탕으로 내사종결 또는 사건송치한 후 수사검사가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조사하여 재판에 사건을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의 단계를 말합니다. 이때 수사검사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검사의 직권으로 형사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의 피해자 지원제도는 이 책의 7장(p.97)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신고 전 단계

1) 증거와 증인 확보하기

증거와 증인이 없다면 가해자의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1) 해바라기센터 및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 가기

- 피해자의 입, 향문, 성기, 손톱 밑, 유두 등에서 증거를 채취하여 가해자의 정액, 타액, 체모 등을 확보합니다. 의학적 증거는 72시간 내에 진찰을 받아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갑니다. 입은 옷 그대로 가져가거나 갈아입더라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해바라기센터 및 전담의료기관에서 응급키트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에 남은 증거 채취 가능)
- 감염 치료와 사후피임약 처방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의료기관은 가는 것이 좋습니다.
- 상처나 멍든 부위를 사진촬영(얼굴과 같이 나오도록) 하고 진단서 등을 받습니다. 피해 후 6~21일 후에 멍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신경정신과 등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하고 관련 소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바라기센터는 24시간 의료진과 전담수사관이 상주하고 있어 응급의료지원, 심리상담, 수사지원(피해자 진술녹화)이 가능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또는 무료법률지원 단 소속 변호사 연계로 법률지원이 가능합니다.

(2) 증거 보존하기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은 습기가 차지 않도록 종이봉투에 보관합니다. 피해 장소에는 가해자

신체의 일부(지문, 모발, 분노, 정액, 땀 등)나 가해자의 물건(홍기, 명함, 라이터, 사진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진촬영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억 되살리기

- 수사·재판과정에서 진술할 때 도움이 됩니다.
- 가해자의 특징을 기록해둡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의 키, 체중, 체형, 얼굴형, 머리모양, 신체상의 특이한 부분(상처 자국, 문신, 금속 치아 등), 행동상의 특징(왼손잡이, 특별한 피복 등), 가해자 성기의 특징, 가해자가 한 말이나 발음상의 특징 등을 적어둡니다.
- 사건에 대해 기록해두는데, 구체적인 장소, 시간, 날짜, 목격자나 증인, 자신이 대응했던 방법, 가해자의 태도, 이에 대한 느낌 등을 자세히 적도록 합니다. 이것 자체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가해자 진술, 증인 확보하기

- 가해사실을 자백 받거나 사과문을 받으면 증거가 됩니다.
- 가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대화할 때 가해사실을 시인하는 가해자의 말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녹음은 대화하는 사람이 직접 해야 하며 피해자의 음성도 함께 녹음되도록 합니다.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한명은 통화하고 다른 한명이 녹음을 하는 경우).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 배제에 의해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가해자가 시인하는 경우에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더 좋은 것은 가해자가 직접 자신의 가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하는 경우입니다.
- 컴퓨터 화면 캡처, 스마트폰 화면 캡처,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내용 등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때에는 편집 없이 그대로 출력하여 출력물을 제출하면 되며, 받은 날짜와 시간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이메일이나 메신저,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이용해 가해자에게 성폭력의 중단이나 사과를 요구하여 증거를 남깁니다. 통화내역도 증거가 됩니다.
- 사건을 목격한 사람, 사건 이후에 가해자 또는 피해자에게 사건 내용을 들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사절차

1) 수사의 개시

범죄의 고소·고발·자수·신고·인지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합니다.

(1) 고소

고소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고발은 고소권자의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형사소송법 제 234조 1항). 성폭력상담소가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면 이는 고발에 해당하지만, 수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결정에 의한 고소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소는 피해자의 권리이며, 가해자의 처벌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재판시 일어날 수 있는 2차피해에 대해서도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소를 결정할 때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가 비친고죄가 됨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고소와 신고가 가능하며,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 고소권자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보통은 부모), 피해자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친족(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 지정고소권자(고소권자가 없을 시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검사가 10일 이내 지정 한 자)가 고소권자가 되며 대리인이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 친고죄와 비친고죄

친고죄란 고소권자(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비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재판을 진행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2012년 개정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모든 성폭력범

죄는 비친고죄가 되었기 때문에 고소를 통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는 각각의 범죄마다 다르며 그 기산점은 범죄행위의 종료 시로 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고소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검사가 이를 간과하고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내립니다.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죄명	적용법	공소시효			법정형
		07.12.21 이전 범죄	07.12.21 이후 범죄	13.6.19 이후 공소시효 남은 범죄	
강간살인	형법 제301조의2, 성폭력처벌법 제21조4항	15년	25년	없음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치사	형법 제301조의2, 성폭력처벌법 제21조4항	10년	15년	없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강간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1조	10년	15년	동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	형법 제297조	7년	10년	동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 강간	성폭력처벌법 제6조1항, 제21조3항	10년	15년	없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 강간	성폭력처벌법 제7조1항, 제21조3항	10년	15년	없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 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1항	10년	15년	좌동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	형법 제299조	7년	10년	좌동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해당없음 (13.6 신설)	10년	좌동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 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 제6조2항, 제21조3항	7년	10년	좌동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 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 제7조2항, 제21조3항	7년	10년	없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유사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2항	7년	10년	좌동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7년	10년	좌동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 추행	형법 제298조, 305조	7년	10년	좌동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3항, 제21조3항	7년	10년	없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3항, 제21조3항	7년	10년	없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3항	7년	10년	좌동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2항	7년	10년	좌동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계 위력으로 장애인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6항	7년	10년	좌동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 간음 (의제강간)	형법 제297조, 제305조	7년	10년	좌동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계 위력으로 장애인 간음	성폭력처벌법 제6조5항	7년	10년	좌동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1항	7년	10년	좌동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자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	형법 제302조	5년	7년	좌동	5년 이하의 징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1항	5년	7년	좌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구금시설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0조2항	3년	5년	좌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1항	3년	5년	좌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3년	5년	좌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3년	5년	좌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2조	해당없음 (13.6 신설)	5년	좌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범행일		범죄의 종류
2007.12.21 이전	2007.12.21 이후	형사소송법 제249조 기준
15년	25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1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년	7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3년	5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2년	3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1년	1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공소시효 기산

- 성폭력처벌법 제21조(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에 의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만 19세)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2012.4.15. 시행). 만약 1993년 9월 26일 생인 경우 2013년 9월 26일이 되면 만 20세가 되므로 2013년 9월 26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청소년성보호법에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이며, 단 이때 만 18세인 경우에도 피해일시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지났으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과 강제추행의 미수범,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강도강간의 죄,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죄, 장애인·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은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이상의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2013.6.19 시행), 강간살인과 강간치사 역시 공소시효를 배제한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2) 신고의무자

누구나 성폭력범죄를 신고할 수 있지만 특히 법에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정한 사람을 신고 의무자라고 합니다. 이는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시설의 종사자는 성폭력범죄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따르

게 됩니다.⁶⁰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이란 학교나 유치원, 입원 치료 중의 경우 병원 등이 해당되며 피해자를 보호·감독하고 있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성폭력방지법⁶¹제9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2⁶²,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⁶³, 2014년 신설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⁶⁴입니다.

60. 청소년성보호법 제67조(과태료) ④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1. 성폭력방지법 제9조(신고의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6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2(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누구든지 장애인 대상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는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63.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1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③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64.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3) 인지

범죄의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이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내사

내사(內査)란 범죄의 혐의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건 전의 단계에서 수행하는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말합니다. 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2) 경찰조사단계

수사는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는 대략 1~2개월 정도, 검찰 수사 역시 대략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을 때는 구속 수사를 하는데, 구속 수사는 경찰 10일, 검찰 10일이 원칙이고, 검찰에서는 1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최대 30일). 경찰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상 2개월 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검찰에서도 3개월 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1) 피해자조사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대략 1~2개월 내에 피해자를 소환하여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조서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수사 내용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피의자를 조사한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인이나 참고인을 조사한 내용은 진술조서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장애여성이거나 13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피해자 조서는 진술을 녹화한 것으로 대체합니다.

(2) 가해자(피고소인, 피의자) 조사

경찰은 피해자 조사 후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므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 가해자가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하는 기준은 가해자의 도주 가능성, 증거 인멸 우려, 죄질 등이나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며, 특히 증거가 적은 경우는 더욱 확률이 낮습니다. 그러나 만약 가해자가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면 참작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 구속수사 / 재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체포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강제수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와 제201조는 구속의 요건으로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②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③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구속이 되더라도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등에 의하여 구속되었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영장실질심사

피의자가 구속되기 위해서는 영장전담 판사가 사건을 검토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15.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보건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에 피의자를 불러 심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구속적부심

이미 피의자가 구속이 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구속의 적법성을 검토하거나, 구속 이후 중대한 사정의 변화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졌는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면 법원은 청구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2항4)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은 보통 피의자를 심문하는 것으로 그치며, 피해자나 제3자의 진술까지 듣는 경우는 적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구속과 관련된 의견을 탄원서로 검사에게 미리 제출하거나 고소장에 적으면 판사가 참조할 수 있습니다.

(3) 주변인(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가해자가 아닌 제3자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은 사건에 따라 다양한데, 보통 목격자,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참고인으로 조사합니다.

(4) 대질신문

대질신문은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을 한 자리에 불러서 수사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사건에서는 보통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질신문하게 됩니다. 대질신문은 모든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에 피해자가 대질신문에 응하기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들 때 피해자가 대질신문을 거절하면,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질신문 시 가해자 직접 대면을 지양하고 전자영상장비를 활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훈령 제674호).

또한 수사기관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는 법적 증거능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요하게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증거수집 및 조사

경찰은 피해자 및 가해자, 주변인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주로 범행현장의 CCTV나 DNA증거, 휴대전화나 인터넷

채팅내용, 문자메시지가 증거로 채택됩니다.

3) 경찰수사 종결

(1) 송치

경찰에서 수사를 완료하고 수사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로 사건 기록을 넘기는 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고소, 고발 사건의 경우 경찰은 고소, 고발장 접수 시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할 때에는 사건에 대한 의견을 함께 알리는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것은 수사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뜻이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혐의가 없는 등의 이유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의 의견으로 검찰은 독자적인 수사결과에 의해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경찰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는 고소, 고발자의 권리입니다. 성폭력사건의 경우 비친고죄가 되어 고소를 하지 않아도 형사절차는 진행될 수 있지만, 사건에 대한 처분 통지서나 처분이유서를 받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검찰수사

(1) 검찰수사

검찰이 경찰로부터 관련된 사건 기록과 증거를 모두 넘겨받으면 수사 검사가 사건기록을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 보강수사를 한 다음,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도 피해자와 가해자,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조사에서 작성하는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므로 역시 꼼꼼하게 확인 후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2) 검찰수사의 종결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검찰 스스로 수사를 한 사건이 종결되면 검찰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 공소제기(기소)

공소제기 또는 기소는 피의자에게 유죄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사건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그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소 또는 고발에 따른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장 수사재판절차의 이해: 재판단계 (P.50)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공소제기 및 취소

검사가 ①피고인의 성명,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죄명, ③공소사실, ④적용법조를 기재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됩니다. 그러나 제기된 공소도 1심 판결 전까지 검사가 공소 취소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공판정에서 구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불기소

수사 결과 기소 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하지 않거나, 비록 기소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혐의 없음(무혐의, 범죄 인정 안 됨)

수사 결과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2호가목).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대해 판단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

②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2호나목).

③ 기소중지

가해자나 목격자 등이 출석하지 않아 수사를 계속할 수 없어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없을 때 내려지는 조치로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잠정적으로 기소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이 때 피의자가 도주를 한 경우에는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명수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피의자를 다시 발견하게 되면 다시 수사를 계속하게 됩니다.

④ 기소유예

검사가 수사한 결과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피의자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변상의 유무, 합의의 성립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미루는 결정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1호).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改過遷善)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제1항). 또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1조제3항).

⑤ 죄가 안 됨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되나 위법성 또는 책임이 없는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예를 들면 정당방위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 피의자의 연령이 만 14세 미만일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입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3호).

⑥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법령의 개폐(改廢)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면(赦免)이 되거나 형이 면제가 된 경우 등에 내리는 처분입니다. 또한 동일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나 그 공소를 취소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닌 이상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

⑦ 각하

검사는 사건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5호).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혐의없음이나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새롭게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5)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

(1) 항고

검사의 처분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통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이유를 포함한 항고장을 제출하여 사건재수사신청(항고)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고장은 사건번호와 사건명, 피의자 성명, 항고이유, 날짜,

작성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정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제2항).

(2) 재정신청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관할고등법원에 그 결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항고의 기각결정에 대한 통지를 날부터 10일 이내,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항고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해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 2항, 제3항 · 제4항)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회부하게 되고, 재정신청 수락결정이 있을 때에 공소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3) 재항고

재정신청권자(피고인 또는 고소인, 고발인, 대리인)가 아닌 사람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3일 이내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 · 제2항) 공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

Q12.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여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은 없고, 피해자(고소인)와 가해자(피고소인)의 인적사항(또는 인적사항을 알지 못할 경우 피고소인의 특징), 피해를 입은 내용(수단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처벌 의사를 포함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피해자는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친구 집이나 성폭력상담소, 변호사 사무실 등을 송달 장소로 기재하여 우편물을 보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화 번호의 경우도 조사과정에서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핸드폰 또는 친구 집 전화로 연락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비밀수사 요청).

수사기관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애매한 언급을 피하고 핵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용어를 사용하여 신중하게 작성하되 법률전문가나 성폭력상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경찰이 대신 고소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한 뒤 접수하고, 고소장의 사본도 보관하도록 합니다.

고소장의 제출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소지, 사고 발생지의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검찰 관할 문제를 고려하여 가해자의 주소지에서 접수하는 것이 신속합니다. 피해자가 장애여성일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심리평가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p. 138, 고소장 서식 참조)

Q13.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고소를 했더라도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밖의 이유로 취소(처벌요구 의사를 취소하는 것)할 수 있습니다. 고소취소는 서면 제출 또는 구술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Q14. 피해자 조사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피해자는 각 진술의 일관성에 유의합니다. 조사받기 전에 사건내용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불리 대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피해자는 진술조서에 서명날인을 하는데, 이때 반드시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틀린 내용이나 자신이 진술한 것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했는데 기재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글을 모르는 경우에는 경찰관에게 읽어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조서는 범죄에 대한 증거가 되고, 이의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서명날인하면 재판 과정 중에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꼼꼼히 읽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는 필요한 증거를 경찰에 제출할 수 있는데, 제출할 증거가 서류면 가급적 복사본을 제출하고 (또는 복사해둔 뒤 원본을 제출) 물건일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Q15. 대질신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수사기관은 대질신문을 하기 전에 먼저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대면하는 사실을 알리고 대질신문에 응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피해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키거나, 대질신문을 전후하여 가해자로부터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성폭력처벌법 제23조). 수사 전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Q16.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검찰에 가서도 조사를 해야 하나요?

>>> 검사는 사건의 기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진술을 마친 후에는 진술 내용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 후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Q17. 범인이 범행 후 해외도피를 하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중단됩니다. 범인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중단되므로 아무리 오래 해외에 도피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인이 공소시효가 5년인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피하여 9년간 지내다가 국내로 들어와 1년 뒤 체포된 경우, 공소시효는 1년만 지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도피생활을 하면 시효가 진행되므로 처벌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Q18. 가해자가 외국인이거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 국내에서 일어난 범죄는 가해자나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밖에서 저지른 범죄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는데, 피해자가 외국인이어도 관계없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밖에서 피해를 입어도 국내법에 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고, 가해자가 외국인이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미군인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차적 행사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은 미군의 다른 구성원, 군속, 그 가족의 신체나 재산을 침해한 범죄와 미군구성원의 공무집행 중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일어난 범죄는 예외적으로 파견국인 미국이 1차적 행사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관계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형사관할권을 놓고 경합을 벌이면 미군이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OFA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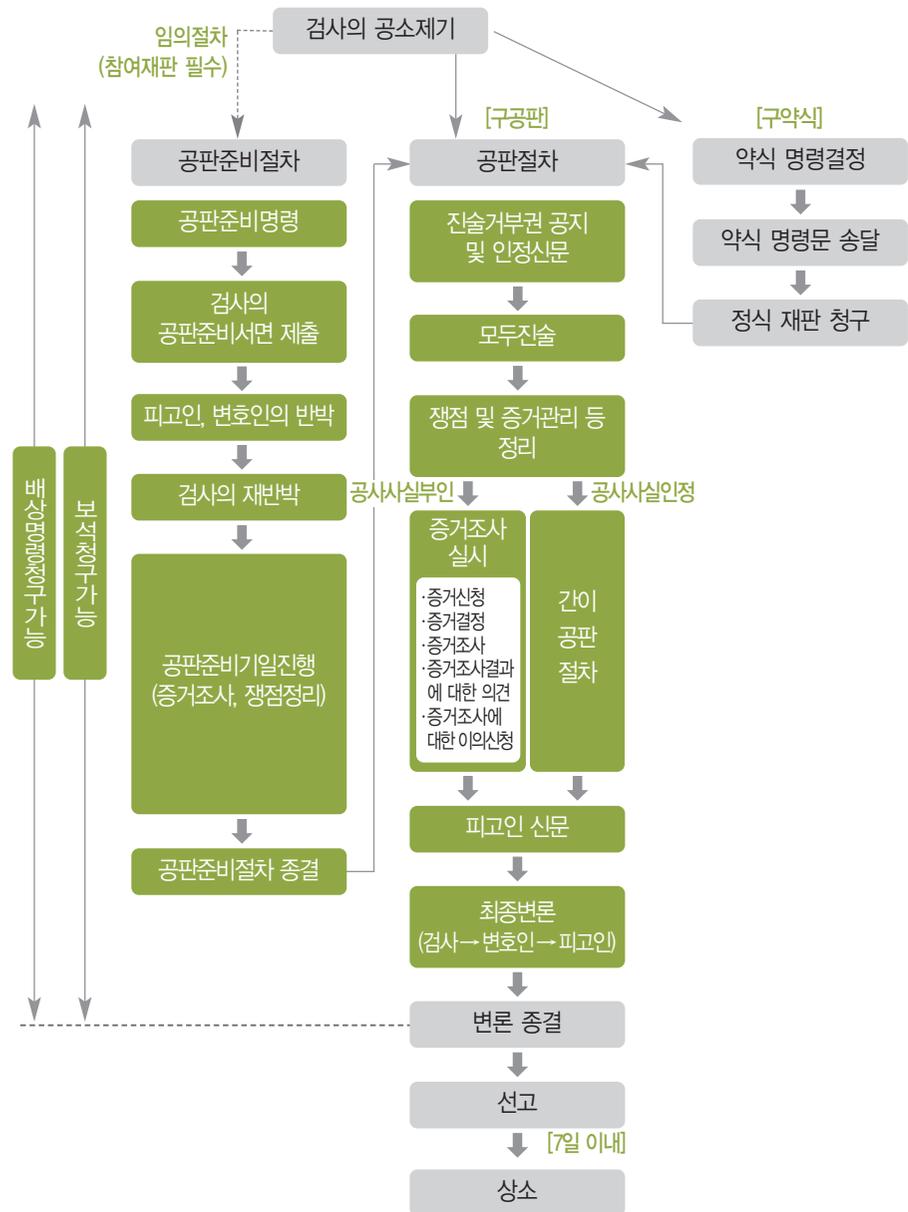
제22조 제1항 (가)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제1항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제22조 제3항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합중국 군 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1)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2)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나)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3장

수사·재판절차의 이해: 재판단계



I. 재판단계

1. 재판단계

1) 재판단계란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마치면 수사 검사가 법원에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공소제기를 하게 되는데 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이 재판을 열게 되는데, 대략 기소 후 1~2개월 안에 공판(기소된 형사사건의 형을 확정하는 심리나 판결을 내리는 재판)이 시작되고, 구속재판의 경우 1심 6개월, 2심 6개월, 3심 6개월 내에 처리됩니다. 그러나 불구속재판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통상 기소 후 한 달을 전후해서 첫 기일(재판을 하는 날)이 잡히고,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경우엔 통상 1, 2회 정도에서 재판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자백을 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을 정하면서 재판이 계속 되는데 기일은 보통 2~3주에 한 번씩 같은 요일에 열립니다. 피해자, 목격자 등에 대해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피해자나 목격자는 법원의 증인소환장을 받으면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합니다. 증인석에서 허위증언을 하면 위증죄,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하면 위증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일 증언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조사가 끝나면 재판이 종결되고,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가해자의 최후진술 등 결심재판을 거친 뒤 2~3주 후에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합니다.

공판절차의 소송당사자는 검사와 가해자(피고인)이고, 피해자는 소송관계인의 지위를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재판 전 과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검사가 대리하는데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의견을 전하거나 재판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변호사는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는 역할로 한정되어 있어 검사, 피고인과 대등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주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은 3심 제도로 이뤄져 있는데, 1심은 지방법원에서 2심은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3심은 대법원에서 각각 이루어집니다. 1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피고인 측이나 검사 측에서 각각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2심 재판을 통해 1심의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1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2심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 피고인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면 이때부터 가해자는 피고인 이라고 불립니다. 즉 가해자는 수사 절차에서는 피의자로, 재판절차에서는 피고인으로 불립니다.

2) 약식명령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하고, 위 절차에서 한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약식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고, 판사는 사건이 중하거나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검사, 피고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상소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진 사람(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정식 재판으로 판단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항소와 상고

재판 판결 선고 후 판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검사와 가해자 및 가해자 변호사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또는 상고(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판결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직접 항소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사에게 항소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지나면 더 이상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특히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2. 형사재판 판결의 종류

1) 유죄판결

심리 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유죄인 경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형은 교도소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복역하게 되는 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곧바로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뤄 그 기간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집행유예이고,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기간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선고유예입니다.

2) 무죄판결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공소사실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은 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 일사부재리의 원칙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라고 합니다. 즉, 형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배상명령

배상명령제도는 1심 또는 2심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성폭력 사건의 경우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결정을 받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일부라도 인정되면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p.145, 서식 참조)

가석방

형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형기가 끝나기 전에 석방되는 제도임에도 피해자에게 석방 여부를 알려 주지는 않으므로 가해자의 수감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가해자의 구금상황(구속·석방)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 259조의2).

3. 그 외 가해자 처벌제도

이하의 가해자 처벌제도는 검사가 구형을 할 때 부가적으로 청구하도록 되어있는 제도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집행됩니다.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성폭력처벌법 제16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할 경우, 또는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가석방 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 기간 관찰

하는 제도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은 성폭력방지 교육 등을 일정 기간 받도록 하는 제도이고, 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로 일정 시간 동안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2) 전자장치 부착명령(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검사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 중 해당하는 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 부착기간을 정하여 특정 성폭력범죄 판결과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합니다. 피해자가 민사상 가처분 신청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성충동 약물치료(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19세 이상의 성폭력 가해자 중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약물로써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입니다. 그 자체로는 교정의 효과가 없고 반드시 심리치료나 교정교화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하여야 합니다.

4)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성폭력처벌법 제42조~49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성범죄 요지 등을 등록기간 동안 일반 누구에게나 성범죄알림e (www.sexoffender.go.kr)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명령 기간 동안 가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주민 및 유치원, 어린이집, 각 급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에게 가해자의 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있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취업제한제도(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2013년 이후 벌금형도 포함)는 그것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지원시설, 학교, 학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뿐만 아니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

업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체육시설 등에 종사할 수 없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법인의 경비업무 및 의료기관 의료인으로 종사할 수 없습니다.

6) 접근금지가처분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처럼 가해자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와 괴롭히는 경우에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이란 추가하여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기본이 되는 죄명 없이 접근금지가처분만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피해자가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가해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 접근금지명령

가해자가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라면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9조에 의해 접근금지명령이 가능합니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가정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집이나 주거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
-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집이나 직장 등에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④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 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①,②,③ 조치는 2개월까지 가능하고 2회 연장할 수 있으며, ④,⑤조치는 1개월까지 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사는 심리 결과 필요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6개월 동안 금지하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4.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이를 재판부가 참고하여 판결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공소장 부분송달 이후 7일 이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진정서나

탄원서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5. 소년보호재판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라 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이라 하여 병원이나 요양원 수용, 소년원 수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처벌을 내리는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미성년자인 만 10세~13세가 포함되는 점을 유의). 소년보호처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게 되지만, 해당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거쳐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징역형이 처해지면 소년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합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009: p. 250~251)⁶⁵

6. 군사재판

가해자가 군인인 경우나 가해 이후 군인이 된 뒤에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군사법원의 관할을 받게 됩니다. 군검찰과 군사법원은 일반 검찰 및 법원과 조직 구성이나 운영에 차이가 있어, 피해자로서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군대라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한 경우도 있습니다. 군사재판의 자세한 내용은 8장 피해자 특성에 따른 지원(P.122)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⁶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2009), <풀지마, 형사절차>, 도서출판 사람생각.

Q19. 공탁금은 언제 찾아가는 것이 좋은가요?

>>> 피해자가 공판 중에 공탁금을 찾을 경우 가해자의 형이 감경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큼니다. 즉, 1심 재판 후에 공탁금을 찾았는데 가해자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공탁금을 찾았던 것이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탁금을 찾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20. 공탁금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은 못하나요?

>>> 공탁금을 받았더라도 그것으로 피해가 다 보상되는 것은 아니며 공탁금으로 이미 수령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 수령 시에 그 공탁금은 손해배상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공탁소에 알려야 합니다.

Q21. 내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예정된 공판기일의 날짜나 증인 출석여부, 판결 결과 정도의 개괄적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이 연기되었을 때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기일이 아니면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판을 방청하러 가기 전에 '나의 사건검색'으로 공판기일 날짜를 확인해보면 유용합니다. 관할법원과 사건번호, 가해자의 성명을 말하고 법원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22. 사건번호를 구성하는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 형사사건의 사건번호는 1심의 경우 '2014고단(고합)○○○호'로 표기되는데 '2014'는 기소를 한 연도를, '고'는 형사 1심이란 의미를, '단'은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사건임을, '합'은 합의부(세 사람 이상의 법관이 합의하여 재판의 내용을 결정하는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사건임을, '○○○'은 접수순에 따른 일련번호를 의미합니다.

2심에서는 '2010노○○○호', 3심은 '2010도○○○호'로 표기됩니다. 2심 이상은 합의부에서 재판하기 때문에 단독, 합의의 구별이 없습니다.

Q23. 접근금지처분 신청서는 쓰려면 증거가 필요한가요? 신청서는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하나요?

>>> 가처분의 경우에는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침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가해자나 그의 가족들이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폭행죄 또는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경찰 등의 협력을 구해야 합니다. 정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녹음이나 녹화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괴롭힘의 장소가 사업장이라면 업무방해죄로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폭

력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하고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신청서는 신청취지에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면담을 강요하거나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거나 팩스
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
우에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금 []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라는 형식으로 그 상황에 맞게
기재하고, 신청 원인에는 그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 됩니다.

Q24. 가해자의 출소여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해자의 출소 여부는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홈페이지(<http://www.kcvc.net>, 02-539-4901)
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25.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수사 검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공판 검사)가 다릅니다. 재판도중 추가
로 제출할 증거가 있을 때에 수사 검사가 수사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니 사건을 조사 받았던 수사검
사를 찾아가서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Q26. 피해자가 담당 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소인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검사나 피고인 측에서 고소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
으로 출두할 때 이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 진행 중 담당 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에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사건번호, 피고인, 제출자, 담당재판부를 반드시 표시해
야 하고, 본문 내용에는 하고 싶은 내용을 목차를 달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p. 143, 서식
참조)

Q27. 피고인이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이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10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언어 및
청각 장애인인 경우에는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됩니다.

Q28. 법정형은 5년 이상인데 어떻게 재판에선 징역 2년을 선고할 수 있나요?

>>> 법정형과 선고형은 다릅니다. 법정형이란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어느 정도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그 형량의 한도를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필요적 감경 사
유가 있거나(예: 심신 미약자), 작량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예: 초범여부, 연령, 건강상태 등) 이를 고
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선고합니다. 이것이 선고형입니다.

Q29.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하라고 통지가 왔는데 꼭 출석해야 하나요?

>>>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증언거부 사유로 공무상 비밀, 자신 혹은
근친자가 형사책임을 받을 염려, 업무상 비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
147조 내지 149조). 만일 소환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소
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 6에 의하면 성
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을 직접 대면함으로써 받는 심리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도입하여 증인이 굳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법정 외에서 증언을 할 수 있
습니다.■



4장

기타

1. 기타

1. 역고소

1)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관공서에 허위사실을 고발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일 것과 고의일 것을 둘 다 요구하므로 객관적으로는 허위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소내용이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판례 2003.1.24. 2002도5939).

성폭력피해자의 고소가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객관적인 사실(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이 인정될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고소 전에 법률전문가나 성폭력상담소의 조언을 받고, 증인이나 증거를 잘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공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형법 제307조),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명에게만 유포한 경우에도 그 1명이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신문기자, 특별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는 명예훼손죄를 인정합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사건해결을 위해 주변인이나 상담소 등에 고민을 털어놓거나 대책을 논의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큼니다.

성폭력 사건을 대자보로 붙이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일, 1인 시위를 하는 일은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될 위험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공탁

공판 중에 가해자가 가해사실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고 피해자가 그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공탁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아무 때나 공탁금을 찾을 수 있고, 공탁금 보관 기일은 10년입니다(공탁법 제9조).

가해자가 공탁을 하고자 할 때는 공탁물의 수령인(피해자)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공탁서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공탁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적극적인 합의 노력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가해자와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재판부에 알리고 공탁물 수령인(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가 피고인 측에 유출되지 않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3. 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행하여졌을 것, 손해가 발생하였고 공무원의 불법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이 요건 중 법령 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 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 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2002. 5. 17, 2000다22607). 이를 바탕으로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하면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판례는 성폭력범죄의 담당 경찰관이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범인 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들을 한꺼번에 세워놓고 청소년 피해자에게 범인을 지목하도록 한 행위가 국가배상법상의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 2008. 6. 12, 2007다64365).

Q30. 뉴스에 보도된 사건을 가해자가 속한 집단의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

» 가명 등으로 보도되었는데 가해자가 속한 집단의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여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익목적이 인정되어야 처벌되지 않습니다. 실명으로 보도가 된 경우 이를 옮기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으나 기사를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저작권법위반이 될 수 있으니 편집·수정하고 출처를 정확히 밝히도록 합니다.

Q31. 실명공개 대자보를 붙였을 때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나요?

» 명예훼손은 공개된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의 공개가 공익목적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실명공개 이전에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았으며 실명공개가 문제해결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집단 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인 경우 등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 내용으로 공개된 것 중에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이 있는 경우에도 처벌 위험이 있으나, 공개 당시 피해자와 제3자들의 진술을 통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다른 방법(사과요구, 징계요구 등)을 시도해보지 않은 상태이거나, 피해자 진술 외에 다른 근거가 없는 경우라면 다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명공개 전에 가해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준다면 (가해자가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2.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피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 최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성폭력 2차피해⁶⁶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이 최초로 인정된 것은 경찰이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진술을 녹화하면서 기조작 미숙으로 피해자가 반복진술을 하게 하는 2차피해를 준 사건이었습니다.

일명 조두순 사건에서도 검찰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를 오후 늦은 시간 소환하여 비디오 진술 녹화를 하였는데 기조작 미숙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번 진술을 하게 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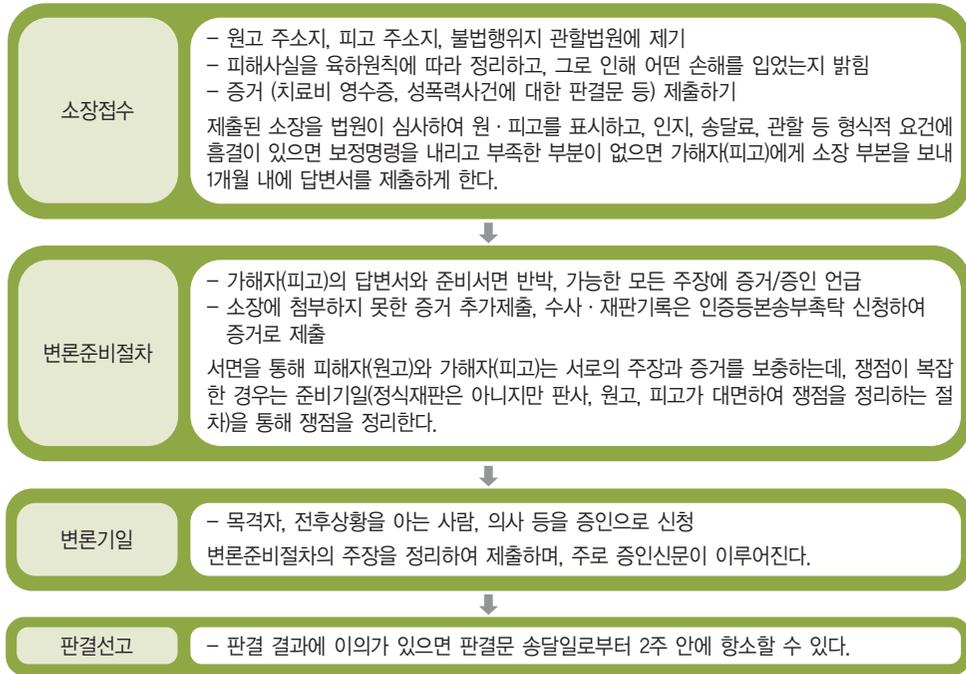
66. 성폭력 피해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이외에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의해 피해 생존자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 생존자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

5장

민사 및 가사 대응

I. 민사적 대응

민사소송절차



1. 민사소송의 이해

1) 소송의 개요

성폭력 범죄로 인한 재산상 피해(치료비 등)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은 민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입니다.(민법 제750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승소하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동시 내지 확정된 후에 진행할 수 있으며, 수사 결과 불기소처분이 되거나, 형사소송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경우, 직장 내 성희롱처럼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예: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93~99년). 형사소송에서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피해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배상 액수에 관하여만 다툼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비교했을 때 가해자의 불법행위 입증이 덜 엄격하므로

형사소송에서 가해자의 무죄가 인정된 경우에도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가해자가 형사처벌이 된 경우

형사소송이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형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에서 가해자가 유죄로 판결된 경우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형사소송에서 가해자가 무죄로 판결이 나면 민사소송에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두 개의 소송(형사, 민사)이 별개의 절차이긴 하나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민사재판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일부 사실만 인정된 경우에는 사실상 영향이 있으므로 민사소송에서는 무죄가 된 부분이라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2) 무혐의, 무죄판결이 된 경우

무혐의, 무죄판결의 이유가 중요하며, 민사소송이 진행 가능한지는 성폭력상담소 또는 법률전문가와의 법률상담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민사소송 포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⁶⁷. 학교·직장에서의 내부 징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에 따른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희롱, 스토킹 등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없는 경우에도 민사소송 진행은 가능합니다.

2) 민사재판 기간

민사소송의 진행기간은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범위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심은 6~10개월, 2심은 4~8개월 정도, 대법원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이 형사재판의 결과가 예상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실질적인 심리를 개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진행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⁶⁷ 보통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하는데, 이 경우 민사소송 포기 합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및 피해자의 출석

민사소송은 수사기관의 개입 없이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여야만 하므로, 앞서 형사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관련된 형사사건 기록을 민사 담당 법원으로 보내달라는 신청(문서인증등본촉탁신청)을 해서 가해자의 불법행위 입증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출석하는 때에는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당사자가 스스로 출석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입증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당사자 본인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문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출석하게 됩니다.

4) 소멸시효

형사에서는 공소시효(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 ; 공소권 없음)가 있는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라는 제도로 인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제도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손해 및 가해자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의 경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5) 관할법원

민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는 채무자(즉, 가해자)의 주소지에 민사소송의 관할을 인정하면서도, 채권자(즉, 피해자)의 주소지, 성폭력이 발생하였던 장소의 관할법원 등에도 관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여러 관할법원 중 본인이 소송을 진행하기에 가장 편리한 곳에 있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외국인이라도 민사소송은 가능하지만, 관할 법원의 문제, 상대방에 대한 재판 서류 송달의 문제, 특히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외국에 있어 그 집행이 어려운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제약을 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6) 비용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안소송으로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이 포함되며 별도로 보존소송으로는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가압류비용 등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구조 요건에 해당하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법률구조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3,550원(2014년 기준)×15회분을 납부하여야 하고, 인지대는 청구하는 금액이 커질수록 늘어나게 되는데, 1십의 경우 청구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 1억 원인 경우, 2억 원 인 경우 인지대는 각 230,000원, 455,000원, 855,000원이 됩니다. 이 경우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송달료와 인지대를 일부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7) 소송 중 조정

고소 전 합의 또는 형사소송 중 합의를 하였음에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⁶⁸, 합의서의 내용이 소송을 통해 강제할 수 있는 것이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이행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민사소송도 진행 도중 양자 사이에 이에 관한 합의가 된다면 종결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법원에서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하고 조정조서를 남기는 방안,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합의하는 방안, 재판 외에서 합의하고 진행 중인 소송은 취하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 중 조정조서와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그 조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서 가해자측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8) 소송비용 확정신청

민사소송이 판결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주문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승소 당사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근거로 패소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올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확정 신청액은 인지대, 송달료 등의 법원 소요비용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그 변호사 비용이 포함되나, 변호사 비용은 지출한 금액이 그대로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일정 부분액만이 산입될 뿐입니다.

2.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은 크게 정신적 손해(위자료), 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재산적 손해는 소극적 손해(피해자가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수입), 치료비 등 피해자가 지급한 비용인 적극적 손해로 나누어집니다. 세 가지의 손해는 별도로 계산되므로 소장에 기재할 때 각 손해에 해당하는 액수를 밝혀야 하며, 각각 손해의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⁶⁸ 형사 합의시 합의금은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받는 것이 좋으며, 합의서 작성 이후에 합의금을 받기로 하는 경우 이행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신적 손해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자료가 대부분이고, 그 액수는 사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외에도 피해자는 장래에 소요되는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성폭력 피해로 인한 후유증(신체장애)이 있다면 이로 인한 수입의 감소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책정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소극적 손해(일일이익 :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으리라 예측되는 소득),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교통비, 향후 치료비, 형사 고소를 위한 진단서 비용,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로 구성된다. 위 사안 중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는 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자료에 기초하여 그 금액이 결정되고 위자료는 법원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타당한 피해보전 및 분쟁해결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액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형사절차 등에서 받은 합의금 내지 공탁금은 고려 요소가 되나, 언제나 해당 액수가 그대로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 받는 것을 명시하였다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므로 '위로금 조', '손해배상금과는 별도' '보험금과는 별도'라는 문구를 넣어야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에만 참작하므로 형사 합의 시 주의해야 한다.

성폭력과 관련된 다른 피해도 사회통념상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민사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합의 시 손해액을 정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서 가해자의 행위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 경우, 그러한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한 개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해자의 친권자인 부모에 대한 청구, 학교·직장 등에서 이루어진 성폭력 범죄의 경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학교 또는 직장에 대한 청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직장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사안에 따라 그 책임여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3. 재산보전조치

형사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을 경우 판결문

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당하게 된 가해자가 재산의 명의를 미리 변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해자는 민사소송 제기 전에 앞서 가압류 등 '재산보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⁶⁹.

재산보전조치란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까지 가해자가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숨기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이러한 재산보전조치의 일종인데, 특히 금전과 관련된 채권(예.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가해자인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서 그 처분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의 절차

1)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진술서 제출

가해자 명의의 재산(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등)을 파악하고 법원에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담보제공명령 및 공탁보증보험가입

가압류는 예비적 조치이므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가해자)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원은 채권자(피해자)에게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및 제3항).

채권자(피해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급여채권·영업자에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일정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 원본을 제출(공탁보증보험증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3) 가압류 재판 및 가압류 집행

가압류 재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피해자)가 주어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고, 담보제공이 되면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검토하여 가압류명령을 내리거나 기각한다(민사집행법 제219조 및 제280조).

재판에 대한 불복: 채권자(피해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민사집행법」 제281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가압류 집행 (강제집행에 관하나 일부 규정 준용):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도록 하고 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압류와 같은 원칙으로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동산압류방식에 의하여 집행한다.

그 밖에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해당 행정관청에 가압류기입등록을 촉탁함으로써 집행한다.

⁶⁹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소 제기 당할 것을 우려하여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화해권고결정

1) 이의신청

소송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서의 정본 또는 결정조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한 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한다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소송은 종료하고, 준재심의 사유가 없는 한 그 결정을 더 이상 다룰 수 없게 됩니다.

이의신청의 방식이 부적법하거나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이의신청은 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는데,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며 화해권고결정 이전에 제출했던 증거와 주장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고 법원은 판결로서 소송을 종료하게 됩니다.

2) 조정과 화해권고결정의 차이

공통점은 판결에 의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안 되어서 판사가 화해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하고, 원고와 피고가 재판부의 결정에 이의하지 않기로 하여 그 자리에서 소송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것을 임의조정, 양쪽에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재판부가 우선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강제조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강제조정을 법률적으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합니다. 즉 조정에 대신하여 판사가 강제적으로 결정하고 누군가가 이의하면 강제조정은 효력을 잃고 다시 재판이 진행되고 양쪽에서 모두 다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사가 강제조정한 그대로 종결하게 됩니다.

임의조정이나 화해는 그것으로 종결되기에 이후에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즉, 판사실이나 법정에서 임의조정 또는 화해가 됨으로써 그 사건은 끝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항소나 상고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강제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들어본 후, “그럼 5,500만원으로 조정(또는 화해권고)해 보겠습니다.”라는 결정문(강제조정일 때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일 때는 ‘화해권고결정’)을 보내면 원고와 피고가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14일 이내에 이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

다. 여기서 누군가 이의제기를 하면 다시 재판이 진행되고 양쪽 모두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재판 중 언제든지 화해권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화해권고기일을 지정하여 화해권고결정 하기도 하고 준비절차기일이나 변론기일에 화해권고결정 하기도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곧바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재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또 이의를 제기하면 재재 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가능한 한 판결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재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이의가 있는 쪽을 설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행권고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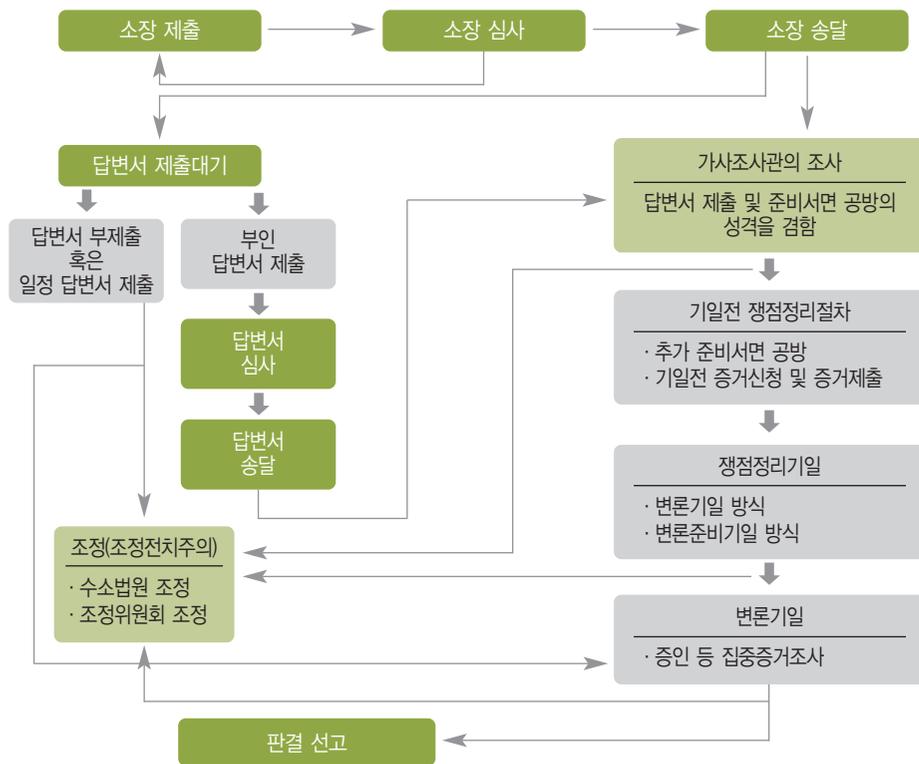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소가가 2천만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분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II. 가사소송

1. 이혼소송

배우자가 자녀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배우자가 다른 제3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등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성폭력 범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보통 결과는 형사사건이 진행된 뒤에야 나오게 됩니다.

이혼소송 절차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가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유책배우자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말하며, 혼인기간, 유책의 정도, 상대방의 직업 등 재산상태, 연령 등을 참작하여 정해집니다.

재산분할

유책사유와 상관없이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이룬 부부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하는데, 혼인 전에 각자가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혼인기간 및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당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하였다더라도 위자료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내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 시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서 정하게 됩니다.

친권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 즉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를 보호·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모가 혼인중인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부모가 이혼한 경우나 혼인 외의 자녀인 경우에는 친권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주지지정권, 징계권, 자의 인도청구권이 있고,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산관리권, 대리권이 있습니다. 이혼할 때는 양육권이 있는 자에게 친권행사자의 지위도 함께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양육비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데 유책배우자의 급여나 재산,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면접교섭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친족성폭력의 경우처럼 피해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의사가 합치하면 소송에 의하지 않고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도 소송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데 미리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하면 추후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는 ①이혼 합의 ②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③숙려기간경과 ④이혼의사확인 ⑤이혼신고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재판상 이혼과의 차이점은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것과 이혼의사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협의이혼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친권상실청구

성폭력 가해자가 자녀의 친권자이거나 후견인인 경우 친권 및 후견에 대한 상실하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검사에게 요청하여 친권상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3조를 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법원에 민법 제 924조의 친권상실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 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가해보호자가 친권상실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쉼터 등 기관 및 단체의 장이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친권상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단독으로 가진 부모로부터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비가해보호자가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가해보호자가 피해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후견인을 지정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도 재판절차이기 때문에 3~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먼저 '양육권자 임시지정' 사전처분을 청구하면 1~2주일 정도 후에 결정문이 부여되어 피해아동을 데려와서 양육할 수 있습니다.

5. 개명허가신청

피해자의 실명이 가해자나 일반에게 이미 공개된 경우, 피해자의 성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명을 하고자 하는 이유와 인적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함께 첨부하여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개명신고서, 개명허가결정문 원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상관없이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p. 148 서식 참조)

Q33. 피해발생 시 유치원, 학교, 시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이 시설의 책임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이 위 기관 안에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성폭력 피해의 의의가 있어서 특별한 주의를 부탁했는데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했는데도 이를 믿지 않아 다시 피해를 입게 만든 경우라면 그 책임을 묻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원아나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하지 않았던 경우, 즉 장소가 학교라 하더라도 수업 외의 시간에 교사의 감독이 없는 상황에 일어난 경우나, 책임자들이 합리적인 관심과 배려를 했더라도 피해를 막기 어려웠던 경우에는 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Q34.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우 그 친권자인 부모에 대해서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 부모, 배우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본인(상속인, 부모, 배우자 등)의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통상적인 경우에는 친권자인 부모)이 소송대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잘 헤아려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권리 포기 또는 권리 행사로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Q35. 가해자나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도 함께 피고로 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즉, 가해자측)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주지 않으면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즉, 가해자측)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압류(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는 국가의 강제적 행위), 현금화(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 배당(현금화된 것을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채권자가 만족을 얻는 것)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즉, 가해자측)가 재산이 없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배상액을 회수할 수 없는 실질적인 한계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판결문은 향후 10년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즉, 가해자측)가 그 기간 내에 재산을 보유하게 되는지에 따라 채권 회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Q36. 가해자가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려놓으면 이를 추적할 수 있나요?

» 가해자 명의로 된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증권, 급여) 파악을 위해서 신용정보업자를 통한 신용조

회를 이용하면 재산의 파악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파악된 재산은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송 제기 전, 또는 진행 중에 가압류를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았거나 외국에 있는 재산은 추적하기가 어려우며, 그러한 사정을 안 때에는 그러한 행위가 채권자인 성폭력피해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임을 주장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피해자)에게 채권자취소권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피보전채권의 발생(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등), 채무자(가해자)의 사해행위,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기초적 법률관계가 존재하고(성폭력 범죄 사실), 채권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민사소송의 가능성 등),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는 경우(소송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적정가격에 의한 매각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으나, 채무자가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매각하였거나, 매각의 대상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면 매각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상관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사실상 추정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피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2항).

Q37.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성폭력하여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이혼사유에 해당하나요?

>>>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 혹은 자녀를 성폭력하여 이혼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폭력가해를 한 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38. 이혼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해부모를 차단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비가해부모와 피해아동의 심리적,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법원은 일정한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처분을 해주는 것이 사전처분입니다. 사전처분은 생활비와 양육비 사전처분, 접근금지 사전처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비가해부모는 법원에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접근금지와 같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면 결정문이 부여됩니다. 생활비와 양육비 사전처분은 부모의 소득과 피해아동의 연령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근거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후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거나, 이혼소송의 변론기일에서 쌍방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전처분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신청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Q39. 법원에서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라고 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내려지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사용자)가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양육비직접지급명령).

또한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청구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위하여 부동산이나 예금 등 일정액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담보제공명령).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담보제공명령이 나왔음에도 담보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일시금지급청구).

Q40. 협의이혼시에 숙려기간을 꼭 거쳐야 하나요?

>>> 가정법원은 2008. 6. 22.부터 숙려기간 제도를 두었습니다. 숙려기간 중에는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법원에 신청을 하면 전문인의 상담을 받도록 법원에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에도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폭력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 유지가 힘들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숙려기간이 단축 혹은 면제될 수 있는데 당사자는 숙려기간 면제 혹은 단축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사유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판단을 해서 통지를 하게 됩니다.

Q41.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의 관할법원은 동일하나요?

>>> 협의이혼은 부부의 주소지 혹은 등록기준지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소송이혼은 ①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②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③피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Q42.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도 협의이혼이 가능한가요?

≫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와 숙려기간이 지나고 판사앞에서 최종적으로 이혼의사를 확인할 때 부부가 모두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출석할 수 없으므로 협의이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조정신청을 하면 재판상 이혼보다 간단하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은 법원에 조정으로 이혼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인데, 재판상이혼 및 협의이혼과 다른점은 숙려기간 없이 이혼을 할 수 있고, 조정결정문을 수령한 후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혼이 성립된다는 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절차로 옮겨져서 진행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Q43. 협의이혼시에도 양육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때, 판사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서에 기초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 주는데, 이렇게 작성해준 양육비부담조서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여 집행력이 인정되므로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하며,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하여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Q44. 협의이혼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 나중에 청구할 수 없나요?

≫ 협의이혼만 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면, 위자료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5. 이혼시 위자료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시 위자료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므로 그 액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법률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그 사안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정합니다. 즉,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Q46. 유책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하나도 주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협력하여 혼인 중 형성한 재산'입니다.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어야 하며,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낸 재산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쪽 부모로부터 상속 받거나 증여받은 것 등은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데, 재산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거나, 재산이 형성된 후 상당한 혼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다르게 유책여부를 따지지 않고,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에게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거나 숨길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이나 재산은닉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고,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47. 친권상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부부 중 일방이 가해자인 배우자를 상대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상실청구를 할 경우에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친권상실사유를 입증할 만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내지 형사판결문, 상담사실확인원 등이 필요합니다.

Q48.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부부관계인데, 성폭력을 한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해아동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부모가 자녀에게 성폭력을 하였을 경우 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 변경청구를 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6장

다양한 대응

I. 다양한 대응

이 장의 대응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앞서 설명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개인적 해결

1)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 우편제도’입니다. 국내우편의 특수취급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소송제기에 앞서 개인 간의 채권 채무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고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내용문서 작성

A4용지(210X297mm) 한 면만을 사용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한글 또는 한자로 명료하게 기재하고 정정 시에는 그 자리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는다(이때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둔다.). 문서의 서두와 말미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문서인지 나타나도록 한다.

●● 발송

문서를 2부 더 복사하여 원본과 함께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한다. 만일 가해자에게 원본을 발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부를 복사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원본과 복사본에 대한 소정의 증명절차가 끝나면 내용문서를 가해자에게 등기발송한다. 내용문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으로 각각 간인한다.

●● 재증명 청구

발송인이나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까지 발송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2) 합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적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는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결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느 시기에든 가능합니다.

공판절차 중에 합의할 경우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합의는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하더라도 처벌은 되지만, 전과가 많지 않거나 피해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실형일지라도 감경될 수 있습니다. 대개 형량 감경 외 유무죄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혹여 합의과정이나 합의액수 등에 비추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이후 있을 수 있는 후유증까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피해자가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의 조건으로 무엇을 요구할지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합의가 파기되었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1) 합의 조건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피해자가 원하는 내용을 최대한 담아서 요구합니다. 합의 조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배상 :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정확한 배상 액수와 지급 방법, 지급을 완료할 날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 이사, 휴학, 휴직 :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에 거주하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기관에 속해 있어 마주칠 수 있는 경우 요구할 수 있다.
- 사과문 : 개인적인 사과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가해자가 속한 기관에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가해자교육 : 가해자교육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성폭력가해자교육을 수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3자에게 사건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받을 수 있다.
-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시하는 것이 좋다.

(2) 주의사항

합의할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① 합의서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 ② 가해자 본인과 합의할 경우에는 자필 서명 날인을 받도록 한다.(대리인을 보내 합의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을 받아두어야 한다.)
- ③ 결과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할 경우 녹음 내용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 시도 중에는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두는 것이 좋다. 대화자 자신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가 함께 녹음된 경우, 설사 대화 상대방 모르게 비밀로 녹음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증거수집 방법에 해당하므로 이후 민형사상의 절차에서 그 녹음 내용을 증거로 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가해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다.).
- ④ 가급적 성폭력상담소 등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며, 합의시도가 성폭력피해의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역고소의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한다.
- ⑤ 합의금 등의 손해배상이 합의조건인 경우, 가급적 합의금을 수령한 이후에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이 좋다.

2. 기타 대응

1) 학내 성폭력

초중고의 경우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는 성희롱 등의 상담을 맡는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이 있을 경우 상담원은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신청인에 대해 조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의 장, 상급감독자와 그 밖의 직원은 성희롱과 성차별에 대한 고충이 접수되었을 때 조사에 협력해야 하며, 신고인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은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제5조 제2항) 한다고 하여 성폭력 관련법을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 학칙과 같은 학교의 규정에 우선해서 적용합니다. 절차상 학교에서 성폭력을 인지한 경우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사법적인 절차가 완료되어 가해자가 학교에 복귀한 뒤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는 등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분리'와 같은

조치는 우선해서 취하기도 합니다.).

대학교의 경우에는 각 학교별 성폭력 관련 학칙이나 내규가 있고, 학내상담센터가 있습니다. 학내 성폭력 관련 학칙을 살펴보면 도움이 되므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권한이 어떤 기관에 있는지, 처리절차와 그 과정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조력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일반적인 학칙의 경우 징계의 기준과 종류, 판단기관과 불복절차 등을 알아봅니다. 성폭력 관련 학칙이나 내규가 없는 경우 총장이나 학장, 또는 교육부에 진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내 제재가 있었다고 하여 고소가 제한되는 일은 없습니다(비슷한 예로 공무원의 경우 일정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때 내부 징계도 필수적으로 수반하고 있고, 선거법에서도 일정형 이상의 형사처벌 시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내에서 성폭력이 아니라 결정이 난다면 수사기관도 그 영향을 받으므로 학내에서 조사하는 과정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의 처리절차에 따라 해결을 했더라도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항). 원하지 않는 성적 함의가 담긴 언행과 요구로 인해 성적 불쾌감을 느꼈거나 이를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받았다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피해자의 고용지위나 일상적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업무 관련 만남의 연속선상에 있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라도 성희롱은 성립합니다. 단 1회의 성적 언동,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성적 언동, 동성의 동료 간에 있는 성적 언동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례에는 성매매업소에서 회식을 한 경우, 간접적으로 성적 언동을 전해들은 경우, 직장상사의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성적 제안 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구 분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적용범위	1인 이상 민간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 고용+업무관계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공공기관 포함) ⇒ 고용 + 업무관계
가해자	사업주, 상사, 동료, 고객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피해자	남녀근로자(사업주 제외),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구직자, 파견근로자, 협력업체근로자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 있는 사람 누구나
조치수단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 행위자에게 △특별인권교육, △손해배상 등 시정권고 -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수립을 위한 조치, △성희롱 행위를 한 자 에 대한 징계 또는 시정권고, △손해배상 권고 - 관계 당사자에 대한 합의권고, 조정
구제기간	-	1년 이내

(1)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나 제3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접수를 할 수 있는데, 사건발생일로부터 1년 이
내에 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접수되면 이에 대해 조사한 뒤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해
자에게 특별인권교육, 손해배상, 성희롱 행위의 재발방지 등을 권고합니다. 또한 성희롱 예
방조치, 성희롱 발생 후 조치 미흡 등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권고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권고 내용을 일간신문의 광고란에 공표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 절차 외에 당사자 간 합의나 조정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하고 있
습니다. 조정절차는 진정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에 상응
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화(국번없이 133), 방문,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의
인권 상담 게시판을 통해 상담하고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사업주가 성희롱과 관련한 처리 방침을 명문화하고, 고충처리기구나 절차를 마련하고(이
경우에 별도 기구나 절차를 대신하여 기존의 고충처리기관,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제39조)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피해를 주장하거나 관계기관에 권리구제를 신청한 것
을 이유로 사업주가 그 피해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등 고용상의 불이
익조치를 하였다면 각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법률에 의거 처벌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업주의 위법한 행위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종합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각 해당 지방노동청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평등위원 (www.molab.go.kr)을 통해 상담하고 진정할 수 있습니다.

Q&A

Q49. 교원징계재심위를 통해 가해자인 교수가 복직되었을 경우 문제제기 할 방법은 없나요?

>>> 교원징계재심위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가해자뿐이고 피해자 등은 법적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원징계재심위에서 복직 결정이 나오지 않게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입니다. ■

7장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I.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성폭력피해자의 권리 및 근거 법률

분류	성폭력피해자의 권리	근거 법률
수사재판 단계	성폭력전담수사관에게 조사받을 권리	성폭력처벌법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⁷⁰
	법률조력을 받을 권리 -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 무료법률구조	- 성폭력처벌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⁷¹ - 성폭력방지법 제3조 및 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⁷²
	의사소통 보조를 받을 권리	성폭력처벌법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⁷³ ,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⁷⁴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 지침 제8조 제2항 ⁷⁵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권리	성폭력처벌법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⁷⁶ , 청소년성보호법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⁷⁷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	성폭력처벌법 제23조 ⁷⁸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신변보호카드 작성 및 비공개) 성폭력처벌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⁷⁹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권리 (범죄피해자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제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⁸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⁸¹
	모욕적이거나 반복되는 조사를 받지 않으며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	성폭력처벌법 제29조 ⁸²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38조 ⁸³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6조(2차 피해 방지) ⁸⁴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8조~제71조 ⁸⁵
	진술 내용을 비디오 녹화촬영 등으로 보존할 권리	성폭력처벌법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⁸⁶
	공판기일 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권리	성폭력처벌법 제41조 ⁸⁷ , 성폭력처벌법 제31조(심리의 비공개) ⁸⁸ , 형사소송법 제184조
	의견을 제출하고 서류를 열람·등사할 권리	형사소송법 제 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⁸⁹
처분 결과를 알 권리	형사소송법 제258조 ⁹⁰	
재판의 증인진술 단계	진술할 권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⁹¹
	피고인의 퇴정을 요구할 권리	형사소송법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 ⁹²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권리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피해자진술의 비공개) ⁹³ , 성폭력처벌법 제31조(심리의 비공개) ⁹⁴
	법정 외에서 증인신문을 받을 권리	형사소송법 제165조 ⁹⁵
	비디오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을 받을 권리	형사소송법 제 165조 2항 ⁹⁶ , 성폭력처벌법 제40조 ⁹⁷
	불필요한 반복증언을 요구 받지 않을 권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영상물 촬영) ⁹⁸
	증인지원절차를 이용할 권리	성폭력처벌법 제32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⁹⁹
재판 이후 단계	선고 결과를 알 권리	형사소송법 제45조 ¹⁰⁰ , 형사소송규칙 제26조 ¹⁰¹
	가해자에 대한 보석이나 집행정지의 취소를 요구할 권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조 ¹⁰²

70. 성폭력처벌법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71. 성폭력처벌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72. 성폭력처벌법 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①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73. 성폭력처벌법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증대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4. 성폭력처벌법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증대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75.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지침 제8조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청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인 때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의견을 참작하여 수화 또는 문자통역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한다.

76. 성폭력처벌법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법원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77. 청소년성보호법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78. 성폭력처벌법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79. 성폭력처벌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8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1.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82. 성폭력처벌법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3.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38조 경찰 직무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보호를 통일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 감사관에 인권보호담당관을 둔다.
84.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6조 (2차 피해 방지) 검사는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충분히 고려한다.
 2.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청하여 고통이 더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피해자가 피의자나 그 가족 등과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대기실에서 기다리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4. 피해자의 고통이 더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를 지양한다.
85.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8조 【인권보호관의 직무】 인권보호관은 인권 관련 제도의 개선, 인권 개선에 필요한 실태 및 통계 조사, 인권교육, 심야조사의 허가와 이 후령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등 인권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시행한다.

제69조 【인권보호담당관의 직무】 ①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보좌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제68조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제70조 【인권침해 신고의 처리절차】 ①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검사를 비롯한 수사업무 종사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이 준칙의 위반 기타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내사사건이나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한다.

②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사건의 수리와 그 처리상황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③각급 검찰청의 장은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 【불이익 금지】 검사를 비롯한 수사업무 종사자는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86. 성폭력처벌법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회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87. 성폭력처벌법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①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여 제30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88. 성폭력처벌법 제31조(심리의 비공개) ①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9.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90. 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91.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제도

지원분류		운영주체	지원대상	지원근거
의료비 지원	의료비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지방자치단체 등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	성폭력방지법 제28조 ¹⁰³
	돌봄비	해바라기센터, 지방자치단체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 및 성폭력피해를 입은 자의 13세 미만 자녀 (*만13세미만)	성폭력방지법 제3조
	간병비	성폭력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등	성폭력피해자 (*의료기관에 입원치료 중이며 가족으로부터 간병이 어려운 사람)	성폭력방지법 제28조
주거지원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그룸홈) - 국민임대주택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지방자치단체 등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	성폭력방지법 제3조 ¹⁰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¹⁰⁵
긴급복지지원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 ¹⁰⁶
범죄피해구조금		피해자 관할 주소지 지방검찰청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 ¹⁰⁷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성폭력방지법 제12조 ¹⁰⁸

92. 형사소송법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 ①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도 같다.
93.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4. 성폭력처벌법 제31조(심리의 비공개) ①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5. 형사소송법 제165조(증인의 법정 외 신문)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96.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피해자
97. 성폭력처벌법 제40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법원은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98.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영상물 촬영) ①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또는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에 따른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99. 성폭력처벌법 제32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들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한다.
100. 형사소송법 제45조(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 피고인 기타의 소송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01. 형사소송규칙 제26조(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①법 제45조에 규정한 기타의 소송관계인이라 함은 검사, 변호인, 보조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법 제340조 및 제3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소권자를 말한다.
②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10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조(보석 등의 취소)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밖에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103. 성폭력방지법 제28조(의료비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04. 성폭력방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
10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⑤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주(제6호, 제6호의2, 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제13호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6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06.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107.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108. 성폭력방지법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성폭력피해자의 권리

1) 수사재판단계

(1) 성폭력전담수사관에게 조사받을 권리

수사기관은 성폭력전담수사관을 지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을 조사하는 사람이 성폭력전담수사관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하에서 설명하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항의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조력을 받을 권리

①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법무부)

모든 연령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면 되고, 피의자 관할의 변호사가 배치되는데 피해자가 원하는 변호사를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습니다.(p. 140 서식 참조)

② 무료법률구조(여성가족부)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여성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가사사건 고소 대리, 형사변호를 맡을 변호사의 수임을 지원합니다.

다만 성희롱 사건은 사안에 따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성폭력범죄로 처벌이 불가하면 민사소송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으로 고소했으나 성폭력은 무혐의가 되고 폭행만 인정된 사건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p. 144 서식 참조)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 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 www.rape119.or.kr)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www.legalai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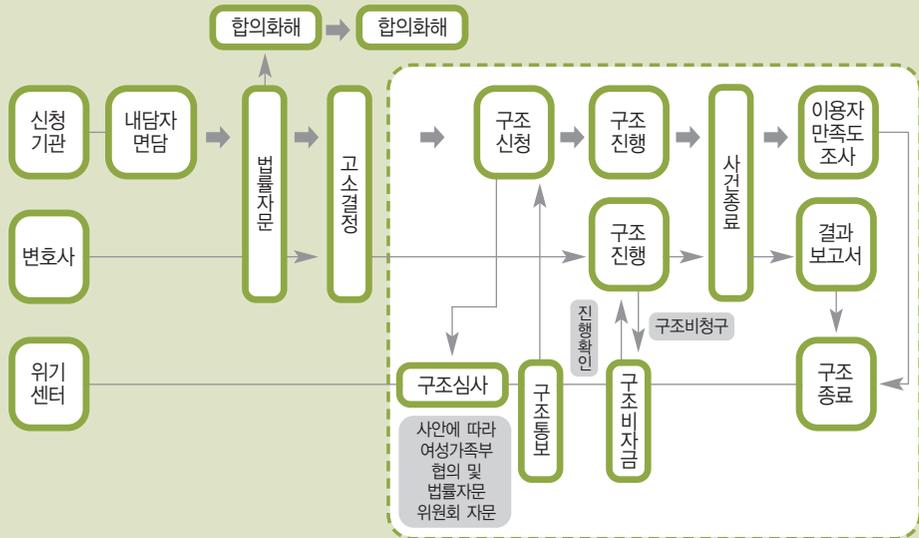
● 신청서류

- 1) 무료법률구조신청서
- 2) 다음 중 1가지 이상의 확인자료
 - 피해사실확인서
 - 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진단서
 - 고소장사본 및 접수증
 - 성폭력 고소사건(형사) 결과 관련서류(민·가사일 경우)
- 3) 이용자 고지사항 확인동의서

● 우선구조대상자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시설입소자

● 신청절차 및 처리과정



● 유의사항

- 1) 합의지원불가 : 법률구조는 기본적으로 합의·화해에 대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구조신청 전 반드시 사건을 선임할 변호사와 면담하고, 고소를 결정할 경우 신청하여야 한다.
- 2) 심사기준 강화 : 선착순이 아닌, 구조 필요성을 판단하여 지원한다.

- 3) 구조 추가신청 : 수사단계(고소,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피해자나 지원단체가 무고나 명예 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의 변호, 재판단계(1심, 2심, 3심 재판)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법률지원이 필요할 경우 상기 서류를 재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인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사전 신청 없이 진행할 경우 상기 서류를 재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인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사전 신청 없이 진행할 경우, 구조비 미책정으로 구조비 부족 및 지급불가 발생)
- 4) 수행 변호사는 법률 구조 경비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률구조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운영기준 제 7조).
- 5) 무료법률구조 사업에 위촉된 변호사는 무료법률구조를 받는 성폭력사건의 피고소인의 변호를 맡아서는 안 된다. 구조사건인지 모르고 선임되었어도 이를 인지한 후에는 선임을 취소하여야 한다. 만일 취소하고 싶지 않다면 위촉변호사를 사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차후로는 무료법률구조사업에 재위촉될 수 없다.

(3) 의사소통 보조를 받을 권리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조사 시 의사소통을 보조할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어 의사소통,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진술조력인을 수사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조사 전에 알려야 하고,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청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인 때에는 수화 또는 문자 통역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할 권리

피해자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을 신청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할 수 있습니다. 특수강도강간이나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인 경우와 이의 미수인 경우에는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의무화되었고, 그 외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특별한 양식 없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았을 때 동석하고

싶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이유 등을 구두로 요청하면 됩니다. 즉각 요청하지 못했어도 전화를 하거나, 조사 당일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석한 신뢰관계인은 수사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5)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

성폭력 사건이 가족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소환장 등 관계서류를 원하는 주소지로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할 때 신고자의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서명은 가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에 관련된 공무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사건과 관련된 내용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9조에 의하면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면 법률 또는 지침을 언급하거나 상급기관에 진정하는 것을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6)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권리

성폭력피해자는 보복우려가 없어도 경찰이나 검사에게 적절한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수강도강간이나 특수강간, 강간치사상 또는 이의 미수인 경우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및 각각의 미수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의 경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인 경우와 이의 미수
-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유인·권유한 자 또는 동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죄 및 각각의 미수,
-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강제추행

신변안전조치의 내용은 피해자-가해자의 관계, 사건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심터 보호, 수사재판절차 수사관 동행, 주거지 순찰, 비상연락망 확보 등의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범죄피해자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제도

- 경찰 또는 검찰에 신청하여 위치확인단말기를 지급받을 수 있다. 위급상황 시 단말기의 긴급 버튼을 누르면 관제센터에서 사용자의 단말기로 전화를 걸어(벨소리 없이 연결) 위급상황이 파악되거나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 112신고와 동시에 단말기 내 GPS 추적으로 현장에 출동한다.
- 피해자 또는 범죄의 신고자 등의 거주지 또는 주소가 가해자에게 알려져 있거나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경찰 또는 검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서 결정하여 이 전비(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7) 모욕적이거나 반복되는 조사를 받지 않으며 인권을 보호 받을 권리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조사 횟수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합니다.

경찰조사 중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관할 경찰서 내의 청문감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이의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상급기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경찰서는 원칙상 변경이 안 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검찰조사 중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다만 각 지청에 있는 인권보호관에게 알려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8) 진술 내용을 비디오 녹화촬영 등으로 보존할 권리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반드시 비디오로 촬영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비디오 녹화촬영을 할 경우 검찰에서 반복된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촬영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공판기일 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권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물건, 서류 등을 제출하더라도 이것들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증거는 재판이 시작된 뒤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 의해 채택이 되어야 증거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와 재판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진술을 할 사람이 재판 때까지 생존하기가 어렵거나 기억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증거가 부패 또는 소멸될 위험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재판 시작 전에도 증거가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재판 때까지 사건에 대한 기억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반복 진술이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때와 같이,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대해 '제1회 공판 기일 이전'에 하는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로 채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 시작 전에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절차를 '증거보전절차'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바로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면 공판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공판정에 나가지 않고 증인신문을 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재판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10) 의견을 제출하고 서류를 열람·등사할 권리

피해자는 법원에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나 탄원서에는 사건번호와 가해자 성명을 기재합니다.(p. 142~143 서식 참조)

또한 피해자·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하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 역시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본인이 진술한 부분은 열람·등사가 가능하나 그 외 피의자 등에 대한 수사기록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1) 처분 결과를 알 권리

피해자는 검사의 처분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피해자가 통지를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하여 원할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 또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http://www.scourt.go.kr/scourt/index.html>)을 통해 본인 사건의 사건진행사항, 통지서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의 증인진술단계

(1) 진술할 권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증인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단, 이미 이 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진술로

인해 공판절차가 너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해도 법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는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거부하거나, 재판부에 그런 질문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불필요한 증인신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검사에게 증인신문 시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피고인의 퇴정을 요구할 권리

피고인이나 그와 관련된 인물이 공판정에 함께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을 법정에서 나가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피고인 등으로 인해 자신이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알려야 하고, 진술이 종료되면 퇴정한 피고인을 다시 들어오게 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진술의 요지를 고지합니다.

(3)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권리

피해자가 증인으로 진술하는 경우,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공판이 진행되어도 성폭력상담소처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등 재판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동석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비공개로 할 경우에는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또는 증인지원관을 통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 피해자 성명, 비공개를 요구한다는 점과 그 이유, 날짜, 재판부 등을 기재합니다.

(4) 법정 외에서 증인신문을 받을 권리

피해자가 어리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법정 외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증인인 피해자는 자신의 상태를 미리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5) 비디오 증계 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을 받을 권리

법원은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했을 때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와 가해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증계 장치에 의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증인지원실 등 피고인이 없는 공간에서 신문을

받을 수 있고, 신문과정은 비디오를 통해 법정에 중계됩니다. 또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출석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되 법정 내에 비치되어 있는 차폐시설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고 신문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 불필요한 반복증언을 요구 받지 않을 권리

증거보전절차에 의한 증인신문을 할 때 재판장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증인신문 과정을 비디오 등 영상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7) 증인지원절차를 이용할 권리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가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도록 민원 공간과 분리된 공간을 설치하고 이를 담당하는 증인지원관을 두고 있습니다.

증인지원관은 법원입구에서 증인지원실까지 피해자를 안내하고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알려주며, 증인신문을 마친 피해자가 법정에서 별도의 출입구로 퇴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원은 증인지원관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증인지원절차는 증인소환장에 첨부된 안내서류를 참조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우편이나 방문접수 하여 신청할 수 있고, 증인지원관에게 전화로 의사를 밝힌 뒤 증인신문 당일 증인지원관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판부에 접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판 이후 단계

(1) 선고 결과를 알 권리

판결문은 선고기일에 직접 방청하거나 검사를 통해 알 수 있고, 재판부에 신청하면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송달하여야 합니다. 판결문은 법원 민원실에서 신청하여 교부 받을 수 있고, 피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대법원 홈페이지에 사건번호와 피해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을 입력하여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가해자에 대한 보석이나 집행정지의 취소를 요구할 권리

구속재판 중 보석이나 구속의 집행정지로 가해자가 석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석은 피고인이 도망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으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 재판 도중 허가하는 경우가 많고, 보증금을 조건으로 합니다. 법원은 보석을 결정하기 전 검사에게 의견을 듣는데, 피해자는 검사를 통해 보석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보석을 허가할 때 주거를 제한하는 등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의 집행정지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하는 것이어서 갖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주어진 조건을 위반하거나, 석방된 뒤 피해자에게 보복 또는 협박을 하는 등 피해자나 그 주변인이 가해자(피고인)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의 해를 입거나 해를 입게 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해자에 대한 보석이나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성폭력피해자 지원제도

1) 의료비지원

(1) 의료비

피해자는 성폭력상담소나 성폭력피해자쉼터,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아서 진료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응급키트를 사용하거나 치료를 받은 뒤 치료비를 이미 지불하였다면 진료비 영수증(간이 영수증은 불가)과 상담사실확인서를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쉼터, 해바라기센터, 관할 시, 군, 구에 제출하여 본인부담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돌봄비

13세 미만의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의 13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돌봄서비스돌봄서비스(민간 베이비시터, 아이돌봄 서비스) 자부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최대 6개월 가량이며 지자체 심의 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3) 간병비

성폭력피해로 인해 입원·치료중인 피해자는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최대 1개월이며 지자체 심의 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관할 시·군·구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2) 주거지원

(1)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그룹홈)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장(2년)이 가능합니다. 성폭력피해자쉼터에서 생활했던 피해자가 우선순위를 가지며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이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입주시 일정금액의 임대보증금을 1회 납부하고 퇴거시 반납되며 입주기간 동안 관리비와 공과금만 부담하게 됩니다.

(2) 국민임대주택

친족성폭력피해자 또는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중 성폭력피해자쉼터에 6개월 이상 입소하였거나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혹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주거지원 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하였거나 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아동청소년 전용쉼터에 1년 이상 입소하였거나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성폭력피해자쉼터 입소확인서나 그룹홈 입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긴급복지지원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6개월 이내, 주소지관할 구청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를 통해 생계·의료·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1개월간(의료지원은 1회)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의해 1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의료지원은 1회에 한해, 그 외 지원은 2개월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과 내용

지원대상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재산: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지원내용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4) 범죄피해구조금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의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가족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은 국가의 상호보증에 있어야만 적용이 가능하며 피해자-가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가해자 등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침해 행위를 한 경우 등은 지급이 제외됩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구조금과 범죄피해로 1~10급 장애를 입거나 9주 이상의 중상해 등 큰 부상을 당한 피해자에게 주는 장애·중상해구조금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소지 또는 거주지, 범죄지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심의 및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쉼터)

성폭력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2014년 현재 전국에는 29개의 보호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p. 171 주소록 참조)

(1) 종류 및 입소대상자

1. 일반보호시설: 성폭력피해여성이면 누구나
2.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피해자
3. 특별지원보호시설: 미성년 친족성폭력피해자
4.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일반, 장애인, 특별지원보호시설 퇴소자로 쉼터의 거주기간이 끝났지만 자립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중인 피해자
5.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퇴소자로 쉼터의 거주기간이 끝났지만 자립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중인 피해자

(2) 종류별 입소기간

종류	입소 기간		
	원칙	연장	
		기간	대상
일반 보호시설	1년 이내	1년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는 등 보호가 필요할 경우
장애인 보호시설	2년 이내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1회당 2년 이내)	입소자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입소자가 초·중·고·대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 (입학 확정자 포함)
(장애인)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장애인)입소자가 취업 및 자립·자활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이수 중인 경우

Q50. 비디오 녹화촬영을 할 경우 재판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진술자이고, 비디오가 자신의 진술대로 촬영되었다고 증언해야 녹화촬영 진술의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조사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비디오 녹화촬영물이 타당성 있게 만들어진 증거라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녹화촬영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녹화된 진술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장에 소개된대로 피해자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주요 역할 및 지원내역

1.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4. 피해자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5.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6.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8. 그 밖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9. 학교생활 지원, 학습지도, 진로지도
10. 문화생활 지원
11. 자립과 퇴소 후 지원
12.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인권 교육

8장

피해자 특성에 따른 지원

I. 이주여성

1. 개념과 현황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2014년 1월 1일 기준 156만 9,47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3.1%를 차지합니다. 이중 48%인 76만 명이 여성입니다. 외국인 여성들은 학업, 결혼, 취업 등을 이유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은 18만 명 규모입니다.

한국은 1990년에야 국제결혼 통계를 내기 시작할 정도로 국제결혼이 많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의 국제결혼은 그 이전의 국제결혼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한국남성이 중개업체를 통해 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 가 그 나라 여성과 맞선을 보고 결혼하는 방식이 등장한 것입니다. 맞선에서 결혼까지는 일주일 전후의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며, 그에 따른 비용 일체를 한국남성이 중개업체에 지불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국제중개결혼의 성행은 국제결혼 수의 급증을 불러왔습니다.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서기 시작한 국제결혼 수는 2005년에 4만 건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국제결혼 중에서도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간의 혼인은 1995년부터 증가 추이를 보이는데 특히 2002년부터 1만 건을 넘어서기 시작하여 2년만인 2004년에는 이미 25,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세로 2012년까지 해마다 2만 건 이상의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간의 혼인이 이루어졌고, 2013년에야 2만건 이하(18,307건)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국민결혼 10쌍 중의 1쌍이 국제결혼 하는 추세입니다.

중개업에 의한 속성 국제결혼이 급증한 만큼 그에 따른 문제도 계속 발생하여 이혼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 구성비율은 9%입니다.

2. 특성과 유의점

1) 체류자격의 확인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2000년대 이후 급증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로 인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있습니다(안전행정부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월 기준 결혼이민자는 179,764명, 혼인귀화자는 90,439명).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출신 여성은 폭력 피해 처리 결과에 따라 국내 체류 여부가 달라지지 않지만, 외국인 신분의 여성은 체류자격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체류자격 유형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에 체류자격 확인이 필수입니다. 외국인 여성이 주로 체류하는 비자는 결혼이민(F6), 고용허가제의 비전문취업(E9), 중국동포의 주요 취업 통로인 방문취업(H2), 엔터테이너의 예술행(E6) 등이 있습니다. 체류기한이 지났거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미등록 상태의 외국인 여성은 추방의 위험 때문에 폭력 경험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한국어 가능 여부 확인 및 통역 제공

한국어 가능 여부는 매우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특히 일상언어 수준과 폭력피해에 대한 진술, 이해는 또 다른 언어 영역이기 때문에 피해여성이 언어 수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지원 등 제도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에는 각 과정에 대한 '설명 통역'이 필수적인데, 법적 제도가 나라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게 제공되는 통역인은 되도록 여성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몇몇 국가의 경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자국 출신 이주민 수가 너무 적어 통역인을 찾기 어렵거나, 일부 국가는 대다수의 이주민이 남성인 상황에서 여성 통역인을 찾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3) 외국인 지원 기관과 네트워크

선주민 상담 기관에서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발생한다면, 외국인 지원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외국인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주민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

피해 이주여성이 선주민이나 혹은 통역인과 같이 방문했을 때, 한국어가 소통되는 선주민이나 통역인에게 피해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이주여성이므로 이주여성에게 직접, 쉬운 말로, 천천히 설명합니다. 언어 전달이 어려운 경우일지라도 필요한 서류는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당사자인 이주여성을 소외시키지 않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한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확인을 거친 정확한 정보를 명확한 언어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3. 지원기관

기관명	연락처	지원 내용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이주여성 24시간 핫라인 13개 언어 지원 6개지역 지역센터 (광주, 대전, 부산, 경기수원, 경북구미, 전북전주)
전국이주여성쉼터 협의회	1577-1366 통해 연계	전국 24개 이주여성 쉼터 협의회 이주여성 보호, 법률/의료/출국/자립 지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02)3672-8988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02-733-0120)운영 서울이주여성쉼터, 단기쉼터 한울타리 운영 전국 6개 지부 (경남, 대구(쉼터), 부산, 전남, 전북(쉼터), 충북(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02) 3147-0516	건강보험 가입이 안 된 이주민을 위한 이주민 의료 공제회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www.liveinkorea.kr	전국 시군구별 211개 한국어교육 등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 운영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1644-0644	외국인노동자 모국어 상담(임금체불, 퇴직금, 사업장 이동, 근로조건 등)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재한외국인의 민원상담과 정보안내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안내창구

II. 아동

1. 개념과 현황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아동성폭력은 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의미합니다. 13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은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성폭력은 가까운 성인으로부터 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13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아동성폭력가해자의 절대다수는 아는 사람이며 아버지를 비롯한 친인척이 가해자의 50% 이상입니다. 가해자는 아동에게 성폭력피해를 비밀로 부치도록 협박하기도 하므로, 아동이 부모 등의 가족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은폐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른들은 아동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줌과 동시에 아동성폭력의 특성과 피해 아동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후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아동성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들에게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성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동이 겁을 먹지 않도록 차분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특성과 유의점

1) 아동성폭력의 인지

만약 아동에게서 아래의 특징들이 발견되면 아동이 성폭력경험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정 성인들에게 이례적으로 경계심을 보이며 단둘이 있기를 싫어한다.
- 특정 장소에서(수영장, 탈의실 등) 혹은 잠을 잘 때도 옷을 벗기를 거부하거나 옷을 지나치게 많이 꺼입으려고 한다.
- 스킨십에 대해 평소와는 달리 강한 거부감 혹은 강한 호기심을 보인다.
- 자기가 누군가의 편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 특정 장소에 대해(학교, 자동차, 유치원 화장실 등) 이유 없이 두려워한다.
- 성기, 항문, 입 주변에 이유없는 발진이나 변화가 생겼다 (부디 성기에서 피가 나가거나 하는 등의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서야 대응하지는 말자)
- 놀랍도록 성적인 용어를 많이 알고 있다
- 어른들의 성에 대해서 조숙한 관심을 보이거나,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인 행동과 관심사를 보인다 (다른 아이들, 동물들, 장난감이랑 놀 때)

지나치게 유혹적인 행동들을 보인다(사실 복종의 표현이다)

노골적으로 성적인 그림을 그리거나 말을 한다

퇴행, 불면증, 평소 하던 놀이들에 대한 싫증, 정신산만, 식욕문제(먹지 않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등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올림 기획 번역「당하지 않겠어」, 2014

이때 아동을 야단쳐서는 안 되며 캐묻거나 대답을 강요하지 않도록 합니다. 반복되는 부적절한 조사는 아동을 위축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동 앞에서 놀라거나 당황스러워 하지 않고 기다리며 참을성 있게 들어주는 태도가 좋습니다. 진술오염 방지를 위해 사건과 관련한 유도질문이나 과도한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아동 (13세 미만)의 경우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해바라기센터)에 배치 등을 참여시켜 진술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지원기관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p. 162)을 참조하세요.

III. 북한이탈여성

1. 개념과 현황

1) 북한이탈여성의 이해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6월 기준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6,854명이고 그 중 북한이탈여성은 18,776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여성이 가장 많이 입국하는 연령대는 20~49세입니다.

북한이탈여성 대부분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러시아 같은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약 2년 이상 체류하게 되며 현지인 또는 조선족과의 강제 결혼, 인신매매, 성매매, 매춘, 성폭력 등의 위험에 크게 노출됩니다. 또한 북에 두고 온 가족 친지에 대한 죄책감이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탈여성이 입국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심리적 문제는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사회적인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주요내용

구분	항목	내용
사회적응교육	기본교육	하나원 12주 392시간 교육 - 연령대·성별 7개반 운영(유아, 유치, 초등, 청소년, 성인남성, 성인여성, 경로) - 건강검진 및 심리상담(46시간), 정치·경제·문화체험(121시간), 진로지도 직업훈련(174시간),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51시간)
	지역적응교육	전국 하나센터 4주 80시간 교육 및 사후지원 - 지역사회 이해, 진학지도, 건강증진, 취업, 경제교육 등
정착금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700만원 지급 - 초기지급 400만원, 분기별 100만원씩 3회
	지방거주 장려금	지방 2년 거주 시 130만원(지방 광역시), 260만원(기타)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노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아동 등 최대 1,540만원 - 1인 1개 사유만 인정, 기본금 지급 종료시부터 분할지급
주거	주택알선	임대주택 알선 - 2년간 임대차계약 해지불가, 소유권·전세권·임차권 변경 불가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 사회편입시 임대주택 보증금만 지급 - 보증금 제외한 잔액은 5년 이후 지급

구분	항목	내용
취업	직업훈련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월 20만원 지급
	직업훈련 · 자격취득 · 취업 장려금	- 직업훈련 500시간 이수 시 120만원, 620시간 이수시 140만원, 최대 740시간 이수시 160만원 지급(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시 200만원 추가지급) - 자격취득시 200만원 - 3년간 근속시 수도권 2,210만원, 지방 2,510만원
	고용지원금 (사업주에 지급)	급여의 1/2을 50~70만원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
	기타	사회적 기업 설립, 영농정책, 소자본 창업 지원, 공무원 특별임용 등
사회 보장	생계급여	하나원 퇴소후 3~5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 - 해당 기간동안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에 한함 - 1인세대 기준 월45만원 수준
	의료보호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서 본인 부담없이 의료 혜택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에 한함
	연금특례	보호결정시 50세 이상~60세 미만시 국민연금 가입특례
교육	특례 편 · 입학	대학진학 희망시 특례입학
	학비 지원	중 · 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상담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사후지원

*출처: 법무부,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법률지원』, 2014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교육을 수료한 후 정착을 시작합니다.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에서 초기집중교육(4주, 80시간 이상)과 초기 정착을 지원합니다(2014년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 31개 하나센터 지정 · 운영). 하나센터는 전문상담사가 취업, 의료, 교육, 복지 등과 관련한 상담을 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담당변호사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24시간 콜센터(1577-6635)도 연중무휴 제한 없이 상담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주거 지원을 받습니다. 주택을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동생활시설(전국 14개소)에 머물기도 하며, 혈연가족이 없는 청소년은 그룹홈(전국 13개소)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 성폭력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여성이 머물 수 있는 여성쉼터가 전국적으로 2014년 현재 2개소 있습니다.

2. 특성과 유의점

1) 경제적 상황의 고려

북한이탈여성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여성의 취업 근속기간은 1년 미만이 67.8%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북한이탈남성과의 임금격차 역시 큼니다. '신용'을 잘 모르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신용정보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제적 피해를 입기도 쉽기 때문에, 아는 사람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입었다면 신용정보를 알려주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 의료지원사업의 활용

북한이탈주민은 정착 후 5년간 1종 의료보호의 수급권자로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고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또는 감액 받아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2일 이상 입원했거나 입원진료를 통해 3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만성 · 중증 · 희귀질환으로 월 외래진료 10만원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등은 지원신청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입퇴원확인서(원본), 진료영수증(원본), 진단서(만성 · 중증 · 희귀질환자에 한함, 2차 진료기관 이상에서 3개월 이내 발급), 본인 통장사본 각 1부를 퇴원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은 본인부담금만 지원합니다.

입국일	만성 · 중증 · 희귀질환	일반	한방	출산
1999.1 ~ 2008.12	50%	30%	20%	X
2009.1 ~ 2014.12	50%	40%	30%	X

3. 지원기관

기관명	연락처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02-2672-0929 www.whrd.or.kr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북한이탈여성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전담센터)	02-825-1272 http://www.peacewell.org/

IV. 군인

1. 개념과 현황

1) 군대 내 성폭력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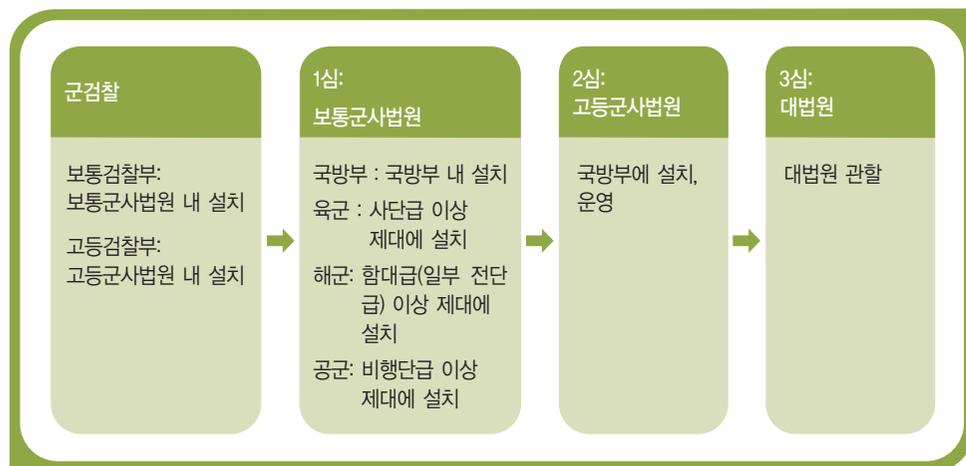
2008년 12월 신설된 성군기 위반사고 방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군 내 성범죄는 강간 및 강제추행과 같이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간통,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을 하거나 이로 인해 불이익과 불공정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는 경우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여성고충상담관을 두고, 병영생활상담관, 인권상담센터, 군법무실 등 군대 내 성폭력 사건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군대문화로 인해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지원단체에서의 적극적인 사건지원이 필요합니다.

2) 군대 내 수사재판의 흐름도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형법이 아닌 군형법을 적용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군인의 형사사건은 군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군검찰은 보통검찰부와 고등검찰부가 있으며, 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상고심은 대법원이 됩니다.

군대 내 수사재판의 흐름도



3) 재판부의 구성

군사재판의 일반 재판과 달리 모두 총 3명의 재판부로 구성되는데,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으로, 고등군사법원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판사 3명으로 구성됩니다. 군판사는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영관급 이상 장교 중에서 임명하는데 일반법원 판사와는 다릅니다. 심판관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군 장교가 군의 특수성을 이유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합니다. 군사재판 또한 일반재판과 같이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하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 내 사건의 경우 고등군사법원 홈페이지(www.hcaf.mil.kr)에서 사건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판결문 사본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군사재판의 대상

군사법원은 형사사건만을 재판하고, 그 외의 민사, 행정 등의 사건은 재판하지 않습니다. 재판의 대상은 군인(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준군인(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예비군, ROTC 등)입니다. 군인신분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만 군사재판의 재판권이 있는데, 만약 가해자가 군인 신분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입대 후에 군사재판에서 재판을 받고, 군인일 때 범한 범죄라도 전역 후에는 일반 법원으로 재판이 이관됩니다.

2. 특성과 유의점

1) 성폭력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위계질서가 강한 군조직의 특성상 군 내부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군대 내 피해자인 경우 여타 사회보다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적 성격으로 인해 거절의사나 불편함의 표시가 불복종으로 여겨져 집단 따돌림이나 보복 또는 전출 등 다른 방식의 징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높아 피해에 따른 호소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가 장시간 지속되거나, 시간이 흐른 뒤에 피해를 호소하거나, 성폭력 피해 외에 부가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성폭력이 사소화되거나, 문제화되기 어렵다.

군 조직은 위계화된 계급조직으로 명령체계에 따른 위계질서가 공고한 집단으로, 성적 농담이나 성적 접촉 등이 친밀함의 수단이나 남성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여겨져 남성 간 성폭력의 경우, 사소화되거나 별일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특히 남성 간의 성

적 접촉이 성적인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해석되면서 성폭력으로 인지되기 어렵고, 남성피해자의 경우, 이를 문제화하면 남성성이 사라지거나 동성애자로 인식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피해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경험을 사소한 문제라거나 개인의 문제로 이해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군 조직 내부에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

군 조직 내부의 성폭력 피해는 드러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대로 처벌 또는 처리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2009~2012년 ‘군인 및 전·의경 성범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여군 대상 성범죄 중 실형을 받은 사건이 2011년과 2012년에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군대 내부에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지원기관

기관명	연락처	지원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133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및 상담
국방부 헬프콜	1303	군대 내 성폭력 피해 상담(여성 전문 상담관 수신)
군인권센터	02-733-7119	군대 내 인권침해사안 상담 및 지원, 국방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 활동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http://gunivan.net	군대 내 성소수자의 성폭력 및 인권침해사안 상담 및 지원

V. 장애인

1. 개념과 현황

1) 장애인의 개념

(1) 장애인복지법 제 2조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상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15개 장애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2) 장애인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뜻하고, ‘장애인’은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국제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disabled persons’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persons with disabilitie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disabled persons’이 ‘사람’보다는 ‘장애’를 강조한 것처럼 보여 한 인간으로서 개인의 능력에 장애가 있다는 의미로 오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보다는 인격적인 존재인 개인을 강조하고, 하나 혹은 둘 이상 존재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의 속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협약에서는 ‘persons with disabilitie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여성

장애를 가진 여성, 장애인의 ‘인(人)’이 성별을 감추고 보편적인 인간, 남성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人)’이라는 말 대신 성별을 드러내는 ‘여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장애여성’이라고 한다. 장애여성은 여성이며 ‘장애’라는 차이와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장애여성 공감 1999.)

2) 장애인성폭력의 현황

(1)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중 지적장애여성이 70%이상

2013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20개소) 상담통계에 의하면 상담소에서 상담 및 사건지원을 한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중 지적장애인이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의 장애특성 및 지적장애인의 삶의 조건이나 환경으로 인한 열악한 사회적 위치로 인해 성폭력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적장애인이 성폭력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을 보호하고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한 보호시설 마련,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에게 적합한 치유프로그램 개발, 지적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 가해자의 67.3%가 친족 및 평소 아는 관계

2013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20개소) 상담통계에 의하면 지원한 장애인성폭력피해자의 가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해자가 친족이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평소 아는 관계에 있는 가해자가 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있고 그 장애를 이용하여 가해를 한 경우가 다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쉽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만들고 가해자에 의해 장애인피해자가 통제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쉽게 구조요청을 하거나 거부 의사를 말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장애인성폭력사건에 개입되는 지원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필요.

한국에서 장애인성폭력사건에 개입되는 지원자는 성폭력전담경찰, 성폭력전담검찰, 성폭력전담재판부, 피해자변호사(법무부), 진술조력인(법무부, 여성가족부), 진술분석가(경찰청), 신뢰관계동석자, 전문가의견조회를 하는 전문가, 증인지원관(법원), 진술분석전문가(대검찰청)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성폭력피해자는 형사사법 절차 안에서 개입하는 다양한 지원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각 영역의 지원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인권감수성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는 각 영역의 지원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해 및 인권교육을 해나가야 할 것 입니다.

2. 특성과 유의점

1)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기 어렵다.

장애와 비장애를 막론하고,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은 더욱이 소통의 어려움, 보호망의 부재, 장애인에 대한 불신, 성교육 부재, 정보 부족, 상담·수사기관의 낮은 접근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성폭력 피해를 타인에게 알리기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기 어렵고 가족 등 제3자가 알게 되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2) 성폭력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성폭력 피해가 드러나기 어려운 만큼 피해가 여러 차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은 장애 때문에 가해자를 알아보거나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더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상담·신고한다는 이유만으로 거짓이라고 단정 짓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혹은 다양한 장소에서 성폭력이 반복된 경우 피해자는 장애특성에 따라 피해 일이나 장소, 방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3) 가해자가 다수이고 가까운 사이인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성폭력을 상담·신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가해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사람이 한 명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가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고의 지연은 성관계 동의와 무관합니다. 피해자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하는 경우가 많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마주치기 쉬워서 성폭력을 신고하기 어렵고, 성폭력이 반복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남에게 알리지 말라는 경고는 쉽게 위협이 됩니다.

4) 성폭력과 성관계의 구분을 어려워한다.

장애인성폭력 피해자의 60-70% 이상이 지적장애여성들입니다. 지적장애여성 피해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인지 성관계인지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피해자에 따라서는 성폭력과 성관계를 구분하여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다만 구분하여 '표현'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장애의 종류로 인한 것이기도 하고, 성교육의 부족,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부재 때문이기도 합니다.

5) 저항의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다.

‘성폭력 피해자는 죽을힘을 다해 저항한다’는 통념은 오랫동안 재판의 전제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두려워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법을 몰라서 성폭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 피해 장애인 또한 같은 이유로 저항하지 못하며, 다른 한편으로 성폭력 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신체적 제한으로도 저항하지 못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부를 무시하거나, 무표정하거나, 가벼운 위협을 한 것만으로도 쉽게 저항을 포기하는 피해자의 사례도 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이 성관계에 동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6) 쉽게 유인된다.

지적장애가 있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할수록 상대방의 작은 호의에 쉽게 유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좋은 곳’, ‘재미있는 것’, 텔레비전, 게임 등 가해자는 피해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을 제시하며 자신을 따라오도록 합니다. 때문에 성폭력 장소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별다른 거부감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성폭행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알아챈다고 하더라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가해자를 따라가게 된다. 가해자에게 유인된 것과 성관계에 동의한 것은 구분하여야 합니다.

3. 지원 기관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p. 162)을 참조하세요.

VI. 성소수자

1. 개념과 현황

성 정체성은 대개 청소년 시기에 확립됩니다. 많은 연구에서 성 정체성은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 확립된다고 보았으며, 사람마다 시기와 기간,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내적인 욕구와 고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합니다.

성적지향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정서적이고 성적인 끌림을 말하며 대상은 동(同)성, 이(異)성, 양(兩)성, 범(凡)성, 무(無)성일 수 있습니다. 동성 또는 양성에 대한 성적 지향은 정신질환이 아니며 치료를 통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신의학계 및 심리학계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성별정체성은 개인이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을 남성, 여성 혹은 다른 어떤 것 혹은 남성과 여성 사이로 자신을 이해하는 근본적 감정입니다. 자신의 사회적, 심리적 성별로 당사자의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그들의 성별정체성과 신체가 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호르몬, 수술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 LGBT

Lesbian(레즈비언, 여성동성애자), Gay(게이, 남성동성애자), Bisexual(바이섹슈얼, 양성애자), Transgender(트랜스젠더, 성전환자), Intersex(간성)의 앞자리를 따서 만든 용어. Queer, Asexual을 포함한 LGBTQIA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 성(적)소수자

LGBT, LGBTI, LGBTQIA가 지칭하는 성소수자를 아울러 총칭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 퀴어

성소수자에 대한 총칭으로 쓰이거나 성소수자의 문화를 말하는 맥락에서 자주 쓰입니다. 원래 ‘괴짜의’ ‘이상한’을 뜻하는 이 단어는 과거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멸시적인 속어였으나 1980년대 미국 등지의 급진적인 성소수자 인권운동진영에서 이 용어와 개념을 긍정적이며 전복적인 방식으로 재정의하여 사용함으로써 오늘날 부정적인 함의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 이반

한국의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부르는 말로 이성애자들을 ‘일반(一般)’으로 일컫는 것과 구별해서 ‘이반(二般)’이라고 한 것이 현재에 이르러 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한국에서 성소수자운동이 시작되면서 ‘二般’은 이성애자들과 다른[異]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異般’으로 확대되어 사용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이후 이성애제도에서 벗어난 성적소수자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되며 ‘퀴어queer’의 번역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 커밍아웃

‘커밍아웃’이란 ‘벽장으로부터 나오다(coming out of closet)’라는 뜻을 가진 영어 구절의 줄임말입니다. 나의 존재를 가두고 있던 벽장으로부터 나와 자기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긍정하는 것, 친구들이나 동료들, 가족 등과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히는 것, 대사회적으로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알리는 행위 모두를 커밍아웃이라고 합니다.

●● 아웃팅 협박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타인에게 자신의 성적정체성을 알려줬다고 협박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적정체성이 타인에게 알려졌을 때 불이익, 차별,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폭력, 사기, 갈취,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고자 합니다.

●● 성적 지향 전환치료

몇몇 심리치료사 혹은 정신의학자들이 소위 “성적지향 전환치료”라 하여 내담자들의 성적 지향을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바꿀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이런 주장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개 동성애를 부정하거나 비하하는 단체들이 그러한 주장을 펴는데, 이들의 내세우는 치료사례는 정신 건강치료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의 기준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과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들입니다.

이에 미국의 심리학회, 정신의학회 및 상담학회는 그러한 심리치료가 내담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폐해를 지적하며 한 개인이 스스로의 동성애적 성향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혐오를 심리치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심리학자 및 정신건강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신을 찾는 내담자들에게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니기에 전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동성애로 인한 문제는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상담 전에 알림으로써 여하한 사회적 편견 없이 중립적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내담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1997년과 1998년에 걸쳐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동성애혐오(호모포비아)/트랜스젠더혐오(트랜스포비아)

동성애자나 동성애/트랜스젠더에 대한 공포, 거부, 혐오로, 낙인을 찍는 태도나 차별하는 행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성전환수술

자신의 성별정체성 인식에 따라 성별정체성과 불일치하는 신체에 대한 위화감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하는 수술로서, 신체 기관 중 일부를 성별정체성에 부합하는 형태로 제거나 변형 또는 새로이 형성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위화감의 정도에 따라서 성전환수술의 여부와 방법은 트랜스젠더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호르몬요법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정체성과 부합하는 성호르몬을 투여하여 신체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르몬요법을 통해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의 성적 기관의 작용을 줄이거나 없애고,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부합하는 신체를 형성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호르몬 요법의 여부와 방법은 트랜스젠더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정신과진단

정신과 진단, 검사, 상담 등을 통해서 성별주체성장애라는 정신과적 진단을 받습니다. 자신의 성별정체성 깨닫고, 트랜스젠더임을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 법적 성별변경/성별정정/성별재지정

공문서에 기록된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 법원에서 정한 절차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고 허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특성과 유의점

1) 성폭력 인지가 어렵다.

성소수자들도 성폭력은 남성이 가해자, 여성이 피해자라는 도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요나 협박, 폭행 등으로 강요된 성관계를 맺거나 성적 접촉이 있었으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성 간일 때, 또는 피해자가 트랜스젠더일 때 양쪽에서 그것을 성추행, 성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폭력으로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제기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범죄라는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도움이나 자원에 접근하기 어렵다.

교제 중이거나 동거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성폭력과 함께 스토킹이나 협박(정체성을 가족이나 회사 등에 알리겠다는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지만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커밍아웃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족, 친구, 동료 등에게 자신의 성적지향이나 가해자와의 교제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고립된 상태가 되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피해자들은 피해상담 및 수사과정에서 정체성이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큼니다. 또한 경찰이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낮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동성간에 일어난 성폭력이나 트랜스젠더에게 일어난 성폭력을 제대로 수사하고, 피해자의 호소를 경청할 것이라는 기대가 낮으며 오히려 경찰에게 모욕, 조롱,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4)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기 어렵다.

위에서 지적한 사항은 공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고 지속하도록 만드는 조건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알고 있는 가해자의 경우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며, 사회적 자원이나 관계망이 좁은 피해자의 경우 상대와의 관계를 고려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정체성을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방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협박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가해자를 격리, 처벌하고 내담자가 적절한 치유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합니다.

3. 대응절차

<상담 절차>

- 가해자와의 동거 여부, 관계지속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피해자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가해자와의 관계를 털어놓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조력자를 확인합니다.
- 가해자 처벌 가능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필요한 경우 정체성을 알리겠다는 협박 등에 대한 대응 방법도 함께 설명합니다.
- 심터 연계 필요성 및 장기적 상담 여부를 검토합니다.
- 성소수자 친화적 심리상담 기관을 안내합니다.

<피해자 대응 절차>

- 가해자와 만나지 않거나 같이 사는 곳을 나와 공간을 분리합니다.
- 정체성을 알리겠다는 협박이 동반되는 경우, 일체의 협박에 응하지 않습니다. (전화, 문자, 메일 등 연락 주고받지 않기)
- 성소수자 단체 또는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 요청합니다.
- 주변의 조력자를 확인합니다. (나의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지인, 임시 거주 공간 등)

4. 지원기관

기관명	연락처	지원 내용
동성애자인권연대 성소수자 인권상담센터	070-7592-9984 lgbtpride@empal.com	전화상담 월, 수, 금 (오전 10~6시), 이메일상담, 전화 문의 후 방문상담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2-745-7942 http://chingusai.net/ xe/counseling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02-718-3542 http://lsangdam.org	전화상담 월~금 오전 10~오후 6시 온라인 상담, 전화 문의 후 방문상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 센터 트랜스젠더 삶의 조각보 만들기 프로젝트	0505-896-8080 jogakbo1315@naver. com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비온뒤무지개재단 부설 별의별상담연구소	http://878878.net/	LGBT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용어 설명 출처 (참고할 홈페이지)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인권길잡이 트랜스로드맵 <http://transroadmap.net/>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용어사전 <http://chingusai.net/xe/term>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 <http://lsangdam.org/faq>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성적소수자 사전
http://ksccr.org/bbs/zboard.php?id=press_dictionary

〈ㄱ〉		〈ㄷ〉				손해배상소송	71	준강제추행	11
가압류	72	대질신문	40			송치	41	증거	11
가석방	53			〈ㄹ〉		스토킹	12	증거능력	104
가정법원	78	〈ㄴ〉		면소판결	34	신고	31	증거보전	103
가해자조사	38	면접교섭	77	명예훼손	62	신고의무자	36	증인	105
각하	44	무고	62	무고법률구조	99	신뢰관계인	101	증인지원관	105
강간	10	무혐의	43	민사소송	68	신변안전조치	102	직장 내 성희롱	89
강제추행	11	민사소송	68			실형	52	진술	38
개명허가신청	78	〈ㅁ〉		배상명령	53	심신미약자	22	진술조력인	101
거짓말탐지기	40	배심원	55	배심원	55	〈ㅇ〉		집행유예	52
고발	32	법정형	58	변론종결	50	약식명령	52	〈ㅊ〉	
고소	32	변론종결	50	보석	106	양육권	77	참고인조사	40
고소장	45	보석	106	보복	102	업무방해죄	57	청소년성보호법	10
고소권자	32	부부강간	24	부부강간	24	영장실질심사	39	초범	58
공동정범	24	북한이탈여성	119	불구속	39	의료인/의료기사	27	친고죄(비친고죄)	33
공소권없음	43	불구속	39	불기소	42	위계	22	친권	77
공소기각	42	〈ㅂ〉				위력	22	친권상실청구	78
공소시효	34	배상명령	53	사건번호	57	위자료	76	친족	22
공소제기(기소)	42	배심원	55	사과문	87	위증	51	〈ㅋ〉	
공증	86	법정형	58	사실혼	22	유사강간	11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1
공탁	62	변론종결	50	사전처분	80	의견서	104	〈ㅌ〉	
공판절차	50	보석	106	사해행위 처분소송	80	이의신청/이의제기	74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1
과태료	90	보복	102	상고	52	이주여성	114	〈ㅍ〉	
교육부	22	부부강간	24	상해	12	이행권고	75	피의자/피고인	51
구속	38	북한이탈여성	119	선고유예	52	이혼소송	75	피해자진술권	105
구속적부심	40	불구속	39	선고형	58	인권침해	103	피해자조사	38
국가배상청구	62	불기소	42	성소수자	129	인지	38	〈ㅎ〉	
국가인권위원회	88	〈ㅅ〉		성폭력	10	일사부재리의 원칙	53	학교 내 성폭력	88
국민참여재판	54	사건번호	57	성폭력방지법	10	〈ㅊ〉		합의	86
국선변호사	98	사과문	87	성폭력처벌법	10	장애인	125	항거불능/항거곤란	22
군사법원	122	사실혼	22	성희롱	12	재산보전조치	73	항고	44
군사재판	56	사전처분	80	소멸시효	70	재정신청	44	항소	52
기소유예	43	사해행위 처분소송	80	소환	38	재항고	45	협박	10
기소중지	43	상고	52			접근금지명령	55	협박	10
〈ㄴ〉		상해	12			접근금지처분	54	협의이혼	77
나의사건검색	57	선고유예	52			정보통신망법	20	형사미성년자	22
남녀고용평등법	89	선고형	58			정식재판청구	52	형사소송	23
내사	38	성소수자	129			조정	71	화해권고	74
내용증명	86	성폭력	10			준강간	11		
고용노동부	91	성폭력방지법	10						

Q&A 목차

1장 성폭력의 개념 및 대응 P.24

- Q1. 부부간간을 처벌할 수 있나요? [부부간간]
- Q2. 가해자로부터 도망치다가 다친 경우, 강간치상인가요? [강간치상]
- Q3. 실제로 강간을 하지 않았지만 모의한 사람도 처벌 가능한가요?
- Q4. 신체접촉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인가요? [강제추행]
- Q5.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 처벌할 수 있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 Q6. 촬영할 때 동의했다면 동영상이 유폐되었을 때 처벌할 수 없나요? [카메라이용촬영]
- Q7. 피해사실이 있는 후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고소하면 어떤 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 Q8. 스토킹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지속적괴롭힘]
- Q9. 가해자가 가해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장애인(준)강간이 성립하지 않나요?
- Q10. 가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 Q11. 성폭력인지 의료행위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의료인성희롱]

2장 수사재판절차의 이해: 수사단계 P.45

- Q12.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여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Q13.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 Q14. 피해자 조사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Q15. 대질신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Q16.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검찰에 가서도 조사를 해야 하나요?
- Q17. 범인이 범행 후 해외도피를 하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Q18. 가해자가 외국인이거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3장 수사·재판절차의 이해: 재판단계 P.57

- Q19. 공탁금은 언제 찾아가는 것이 좋은가요?
- Q20. 공탁금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은 못하나요?
- Q21. 내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22. 사건번호를 구성하는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 Q23. 접근금지처분 신청서는 쓰려면 증거가 필요한가요? 신청서는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하나요?
- Q24. 가해자의 출소여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25.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26. 피해자가 담당 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27. 피고인이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이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 Q28. 법정형은 5년 이상인데 어떻게 재판에선 징역 2년을 선고할 수 있나요?
- Q29.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하라고 통지가 왔는데 꼭 출석해야 하나요?

4장 기타 P.64

- Q30. 뉴스에 보도된 사건을 가해자가 속한 집단의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
- Q31. 실명공개 대자보를 붙였을 때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나요?
- Q32.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피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5장 민사 및 가사 대응 P.79

- Q33. 피해발생 시 유치원, 학교, 시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 Q34.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Q35.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가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Q36. 가해자가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려놓으면 이를 추적할 수 있나요?
- Q37.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성폭력하여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이혼사유에 해당하나요?
- Q38. 이혼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해부모를 차단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Q39. 법원에서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라고 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Q40. 협의이혼 시에 숙려기간을 꼭 거쳐야 하나요?
- Q41.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의 관할법원은 동일한가요?
- Q42.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도 협의이혼이 가능한가요?
- Q43. 협의이혼시에도 양육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Q44. 협의이혼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 나중에 청구할 수 없나요?
- Q45. 이혼 시 위자료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 Q46. 유책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하나도 주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 Q47. 친권상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Q48.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부부관계인데, 성폭력을 한 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해아동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6장 다양한 대응 P.91

- Q49. 교원징계재심위를 통해 가해자인 교수가 복직되었을 경우 문제제기 할 방법은 없나요?

7장 피해자의 권리 및 보호를 위한 제도 P.111

- Q50. 비디오 녹화촬영을 할 경우 재판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고 소 장

(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고소인*

성 명 (상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대리인에 의한 고소	<input type="checkbox"/> 법정대리인 (성명 : _____ , 연락처 _____) <input type="checkbox"/>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_____ , 연락처 _____)		

-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피고소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이메일			
기타사항			

- *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고소취지*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

4. 범죄사실*

*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고소이유

*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고소인 _____ (인)*
제출인 _____ (인)

*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고소인 난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무)인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00지방검찰청 00지청장 귀중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정 협조 요청서		검 사	가	부
◆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인(피해자) 성명 : (주민번호 :) 주거 : 연락처:				
◆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자 성명 :				
◆ 가해자 성명 : (주민번호 :) 주거 : (연락처 :)				
		신청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불신청 : <input type="checkbox"/>		지정 희망 변호인
피해자 국선 변호사 신청여부	※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무 지정 대상 사건 ○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내지 제8조의 피해를 입은 경우			
위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사실(상담소 담당자가 간략히 작성)				
		20 년 월 일 000성폭력상담소 담당자 000 (전화: 팩스:)		
검사 의견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정 변경 신청서

피해자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 소	
법정대리인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 소	
변경 사유	신청일: 20 년 월 일 000성폭력상담소 담당자 *** (전화: 팩스:)			

위 사람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지정된 변호사 ###를 다른 변호사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대한법률 구조공단	법 률 구 조 년 법구 형 제 호				
조 사 자	20	통보사건			
형사법률구조신청서					
귀 공단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구조를 신청합니다.					
죄 명	수사기관 또는 법원명칭 및 사건번호	구속·기소, 기법송치일자	공판·선고 일 자		
의 피 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	주 기	(전화 :)	통지방법	H.P :	<input type="checkbox"/> 문자메시지 수신동의
	송달장소	(전화 :)		E-mail :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수신동의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신 병	<input type="checkbox"/> 구속 <input type="checkbox"/> 불구속	수용기관	수용번호	
대리인 또는 연락대상 가족, 친지	주 소	(전화 :)	통지방법	H.P :	<input type="checkbox"/> 문자메시지 수신동의
	송달장소	(전화 :)		E-mail :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수신동의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의 피 자 와의 관계		
신청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유리한 증인 등 증거, 변론요청내용 등 기재)					
첨 부 : 20 신청인 의뢰자 (인) 위 의뢰자의 대리인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귀중					

배 상 명 령 신 청 서

사 건 20 고 사건명

신 청 인 (생년월일:)

주소:
대리인
주소:

피 고 인

주소:
(현재 구치소 재감중)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금 원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20

신청인 : (인)
대리인 : (인)
핸드폰번호 : 01 - -
전 화 : () -
e-mail주소 : @

※첨부서류: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증인불출석사유서

사 건 :

피 고 인 :

위 사건에 대하여 채택된 증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 1.
- 2.

20

증 인 : (인)
생 년 월 일 :
핸드폰번호 : 01 - -
전 화 : () -
e-mail :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__ (단독,부)귀중

공판(선고)기일 연기 신청서

사 건 :

피 고 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판(선고)기일을 연기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아 래

연기신청사유 :

20

신 청 인 (인)
관 계 :
전 화 : ()
핸드폰번호 : 01 - -
e-mail :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__ (단독,부)귀중

(성년자용)

개명허가 신청서

등록기준지 :

(기본증명서 상단에 표시되어 있음, 주로 본적과 일치)

주민등록등본 주소 :

송달(등기우편)희망주소 :

사건본인의 성 명 : (한자:)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휴대폰) (주택)

신청취지

등록기준지 : _____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이름 “ (현재이름) (한자:) ” 을(를)

“ (바꿀이름) (한자:) ”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의

1.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은 대법원확정 표준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모든 글씨(한자)는 또박또박 바르게 써주시기 바랍니다(정자로 기재).

신 청 이 유
(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소명자료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2.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3. 사건본인 부(父)와 모(母)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2007년 이전에 사망시 사망일시 표시된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4. 사건본인 자녀[성인(19세 이상)인 경우만]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5.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또는 구청) 1통.
 6. 소명자료(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 ※ 대리인이 제출 할 때에는 사건본인의 위임장, 사건본인의 신분증, 도장 지참.

2012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_____ 법원 귀중

(미성년자용)

개명허가 신청서

등록기준지 :

(기본증명서 상단에 표시되어 있음, 주로 본적과 일치)

주민등록등본 주소 :

사건본인의 성 명 : (한자:)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휴대폰) (자택)

법정대리인(친권자) 부 : (한자:)

모 : (한자:)

법정대리인의 송달(등기우편)희망주소 :

전화번호 : (휴대폰) (자택)

신청취지

등록기준지 : _____ 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이름 “(현재이름) (한자:)” 을(를)

“(바꿀이름) (한자:)”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의

1.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은 대법원확정 표준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모든 글씨(한자)는 또박또박 바르게 써주시기 바랍니다(정자로 기재).

신청이유
(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소명자료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2.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3. 사건본인 부(父)와 모(母)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2007년 이전에 사망시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4.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또는 구청) 1통.
※ 부(父)또는 모(母)가 단독으로 제출 할 때에는 배우자의 위임장, 배우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2012년 월 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인)

모 : (인)

_____ 법원 귀중

<이혼소장>

소 장

원 고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주소:
등록기준지:

이혼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7.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와 피고는 1900. 0. 00. 혼인신고를 필한 부부로서 슬하에 000(1900년생, 남), 000(1900년생, 여)의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2. 혼인과정 및 혼인파탄의 원인

가. 혼인과정

원,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0개월간의 연애 끝에 1900. 0. 00.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나. 혼인파탄의 원인

혼인파탄의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한다.

예시: 자녀에 대한 성폭력사건 발생, 상습적인 폭언 및 폭행, 외도 등

다. 소결

위의 사실과 같이 원고부부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호)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원고는 본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3. 위자료 청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혼인생활은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자녀들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금전지급으로써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고는 당사자들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정도, 그 밖에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금 000원을 청구합니다.

4. 재산분할 청구

가. 분할대상재산

(1) 원고 명의

(2) 피고 명의

(3) 순재산액{(1) + (2)}

나. 재산 형성 및 유지의 기여도

5.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피고는 사건본인을 양육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사건본인은 현재 만 00세 여아로써 원고가 양육할 필요성이 있고, 사건본인도 엄마인 원고와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양육비 청구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로 지정된 이상, 피고는 원고와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할 책임이 있는 아버지로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생활비와 교육비로 매월 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7. 결 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 1. 갑 제1호증의 1, 2 혼인관계증명서(원고, 피고)
- 1. 갑 제2호증의 1, 2 가족관계증명서(원고, 피고)
-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기본증명서(원고, 피고, 사건본인)
-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2 주민등록등본, 초본
- 1. 갑 제5호증~ 형사사건기록, 판결문, 진술서, 재산내역, 기여도 입증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1 통
- 1. 납부서 1 통

2000. 0 . 00 .
위 원고 ○○○ (인)

00지방법원 가사과 귀중

<이혼시 가압류신청서>

부동산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주소:

채 무 자 ○○○
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000,000원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피보전권리의 요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 채권

신 청 취 지

-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표시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1900. 0. 00. 혼인신고를 필한 부부로서 슬하에 000(1900년생, 남), 000(1900년생, 여)의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2. 이혼 청구

가. 혼인파탄의 원인

혼인파탄의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한다.

예시: 자녀에 대한 성폭력사건 발생, 상습적인 폭언 및 폭행, 외도 등

나. 이혼 청구 예정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귀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3. 재산분할 청구

가. 분할대상재산

- (1) 채권자 명의
- (2) 채무자 명의
- (3) 순재산액{(1) + (2)}

나. 재산 형성 및 유지의 기여도

다.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의 현재 재산들은 혼인 직후부터 현재까지 채권자의 가사노동 및 아이들의 육아 등으로 인한 것으로써, 재산의 형성 및 유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 온 바, 채권자는 귀원 본안소송을 통하여 위 재산의 50% 정도를 재산분할금으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4. 가압류의 필요성

채권자로서는 본안 소송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요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권 채권에 대하여 지급 즉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압류를 해 두지 않으면 후일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보전의 어려움이 따를 것이 현저하므로 이권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담보제공명령

채권자는 현재 재산이 전혀 없어 공탁금을 납부할 여력이 전혀 되지 않는 바, 이권 명령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소송법 제122조 및 민사집행법 제19조 3항에 의거,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공할 것을 신청하오니, 이를 꼭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 1. 소갑 제1호증의 1, 2 혼인관계증명원
- 1. 소갑 제2호증의 1, 2 가족관계증명원
- 1. 소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 1. 갑 제4호증~ 형사사건기록, 판결문, 진술서, 재산내역, 기여도 입증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

첨 부 서 류

- 1. 위 소명방법 각 1 통
- 1. 납부서 1 통

2000. 0 . 00 .
위 채권자 ○○○ (인)

00지방법원 가사신청과 귀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당사자 부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집전화):
 처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집전화):

신청의 취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
 라는 확인을 구함.

첨부서류

-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제출___, 미제출___)¹⁾
-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끝.

년 월 일

확인기일		담당자
1회	년 월 일 시	법원주사(보)
2회	년 월 일 시	인

신청인 부 인
 처 인

확인서등본 및 양육비 부담조서정본 교부	교부일
부 인	
처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1) 해당하는 란에 ○ 표기할 것. 협의하는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에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제6호 서식의 앞면]

협의이혼제도안내

1.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먼저 관할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협의이혼절차는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①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당사자 혼자 법원에 출석하여 미리 작성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남편과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 이혼신고서 3통

- 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신고서는 그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에 따라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⑤“친권자지정” 란은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를 정한 경우에만 “부” 또는 “모”로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발급) 또는 수용증명서(교도소 및 구치소 발급) 1통을 첨부합니다.

- 송달료 2회분(구체적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을 납부합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

○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되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부부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을 1통씩 교부합니다.
- ※ 우리 법원의 확인기일(예: 1회/1일 매일 오후 3시)

나. 협의이혼의 신고

-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신고가 없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다시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 하면 되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 협의이혼의 철회

-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협의이혼의 효과는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원 소재지	사건 번호	20 호 제 호	담 당 재 판 부	전화:	확인 기일	1회: . . . 2회: . . .
-----------	----------	-------------------	-----------------------	-----	----------	------------------------

*이 양식은 대법원전자민원센터(<http://www.scourt.go.kr/minwon/>)에 게시된 법원양식입니다.

과태료부과 신청서

신청인 ○○○ (000000-0000000)
주 소 :
등록기준지 :

피신청인 ○○○ (000000-0000000)
주 소 :
등록기준지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에게 금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귀 법원 2014드단000000 이혼 등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2014즈기0000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2014. 0. 00. 귀원으로부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양육비로 2014. 0. 00.부터 ○○가정법원 2014드단000000 이혼 등 사건의 소송절차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에 월 000000원씩을 지급한다.”라는 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은 2014. 0. 00.경 확정되었습니다.
2. 그러나 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현재까지 일체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신청인은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은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기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과태료부과 결정을 구하고자 이 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사전처분 결정문(2014즈기0000) 1부

2014. 00. 00.
신청인 ○○○

○○가정법원

귀중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주소록

서울인천권역 (14개소)						
지역	연번	상담소	주소	우편번호	E-MAIL	전화번호
서울	1	가족과 성 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10길 20,201호	152-899	lifree5972@hanmail.net	02) 2688-1366
	2	가족과 성 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02, 401호	153-861	bethelcare@hanmail.net	02) 896-0401
	3	서초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길 10-10	137-840	chg7606@hanmail.net	02) 599-7606
	4	이레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 25 서암빌딩	151-869	iregrin@gmail.com	02) 3281-1366
	5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5마길 8-13	156-832	w-peace98@hanmail.net	02) 825-1272
	6	탁틴내일청소년 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7길 18	120-835	ttn8043@tacteen.net	02) 3141-6191
	7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길 32-42	121-884	ksvrc@sisters.or.kr	02) 338-5801
	8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51길 14(도곡동 로템빌딩) 402호	135-860	ttn8043@tacteen.net	02) 883-9285
	9	한국여성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22길 28	136-053	iffemin@hanmail.net	02) 953-1504
	10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시민공간 나루 3층	121-847	fc@womenlink.or.kr	02) 335-1858
	11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대로 16길 8-4	122-824	hotline@hotline.or.kr	02) 2263-6465
	12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 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7 나길 24	157-833	huesame@hanmail.net	02) 2664-1366
인천	13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345 인천명품관 3층	402-835	inwomen1365@hanmail.net	032) 865-1365
	14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42	405-800	isvrc@hanmail.net	032) 451-4091
경기남부권역(14개소)						
지역	연번	상담소	주소	우편번호	E-MAIL	전화번호
경기	15	가톨릭여성상담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1길 60(사동대학) 대학동 성당별관 2층	426-170	helpwoman@hanmail.net	031) 415-0126
	16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0-33 대원플라자 802호	435-040	kpsangdam@hanmail.net	031) 399-0201
	15	가톨릭여성상담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1길 60(사동대학) 대학동 성당별관 2층	426-170	helpwoman@hanmail.net	031) 415-0126

경기	16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0-33 대원플라자 802호	435-040	kpsangdam@hanmail.net	031) 399-0201
	17	부천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248번길 86 현해탑프로자 302호	420-852	bwhotline@hanmail.net	032) 328-9711
	18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149	422-820	qhdk1997@naver.com	(032) 655-1366
	19	사람과평화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갈곡로 8번길 11, 102호	446-573	ywcccc@hanmail.net	031) 284-1366
	20	성남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100 (동호빌딩 6층)	461-825	snwhl@naver.com	031) 751-2050
	21	수원여성의전화부설 통합상담소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61번지 우림빌딩 704호	442-120	suwonhotline@hanmail.net	031) 232-7795
	22	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29번길 13	464-902	ssialwomen@hanmail.net	031) 797-7032
	23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광덕서로 66 412호	425-807	anycounsel@hanmail.net	031) 413-9414
	24	안성성교육 성폭력상담센터	경기도 안성시 서당길 39	456-310	mh3131@hanmail.net	031) 676-1366
	25	안양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경기도 안산시 동안구 관악대로 76(비산동) 정화빌딩 6층	431-821	awhl96@hanmail.net	031) 466-1366
	26	평택성폭력상담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25, 2층	450-826	pt1366@hanmail.net	031) 618-1366
	27	하남YWCA부설 성폭력상담소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205번길 27 서해상가 4층	465-803	friends-1213@hanmail.net	031) 796-1213
	28	행기레로의원 가정·성상담소	경기 의왕시 전주남이길 23-4	437-822	452-1311@hanmail.net	031) 452-1311
	경기북부권역(7개소)					
지역	연번	상담소	주소	우편번호	E-MAIL	전화번호
경기	29	고양파주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21 로데오메탈릭타워	410-837	gpminwoo@hanmail.net	031) 919-1366
	30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경기도 남양주시 사릉로 20, 512호(좋은인상프라자)	472-802	hlchun@hanmail.net	031) 558-1366
	31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경기도 동두천시 어수로 5	483-120	kdcsvc@hanmail.net	031) 861-5555
	32	양주성폭력상담소	경기도 양주시 독마위로 5, 남양상가 306호	480-060	jubilee125@hanmail.net	031) 864-7545 864-7546
	33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운정행복센터 2층 여성상담실	413-826	pajusangdam@hanmail.net	031) 946-0366
	34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57(경우빌딩3층)	487-823	pchsvc@hanmail.net	031) 542-3171
	35	행복뜰 가정·성상담소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학담로 131	486-852	ljsook724@hanmail.net	031) 832-13150

강원권역 (6개소)						
지역	연번	상담소	주소	우편번호	E-MAIL	전화번호
강원	36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원도 춘천시 효자 2동 668-2, 3층	200-080	chgWSC@hanmail.net	033) 257-4687
	37	속초여성인권센터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307 (교동)	217-806	womennara@hanmail.net	033) 638-1988
	38	영월성폭력상담소	강원도 영월읍 영월읍 단종로 34	230-805	rudska57@hanmail.net	033) 375-1366
	39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부설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454(포남동) 강릉시여성문화센터 2층	210-953	gangneung@lawhome.or.kr	033) 652-9556
	40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원도 동해시 중앙로 188	240-812	dsc4943@hanmail.net	033) 535-4943
	41	한국가정법률상담소원주지부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강원도 원주시 갈머리2길 31, 307호(원주시사회복지센터)	220-964	hrtwlew@hanmail.net	033) 765-1366
대전충청권역(14개소)						
지역	연번	상담소	주소	우편번호	E-MAIL	전화번호
충남	42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조치원 5길 75, 여성회관 1층	339-801	gfcc9191@hanmail.net	044) 862-9191~2
	43	사 가정울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 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서문4길 31-6		ggm9536@hanmail.net	041) 675-9536
	44	아산성상담지원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순천향로 1060(공수리 1037)	336-852	counsel@fisc.or.kr	041) 546-9191
	45	로템나무상담지원센터	충남 공주시 신금 1길 44-11 뉴턴학원빌딩 4층	314-803	broomtree109@naver.com	041) 852-1950
	46	천안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고재 20길 12, 천안신협 2층	330-953	hotwhl@hanmail.net	041) 561-0355
	47	충남성폭력상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66번지 2층	330-050	cnsvc97@naver.com	041) 564-0027
	48	홍성가족상담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장북로 480 서해푸드마켓2층	350-816	help9949@hanmail.net	041) 634-9949
	49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20(복대동)	361-270	c-buk2000@hanmail.net	043) 264-1366
충북	50	제천성폭력상담소	충청북도 제천시 내제로 5길 12(명동 190-3)	390-050	womenjc@hanmail.net	043) 652-0049
	51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대성로 57번길 3층	360-200	ch0968@hanmail.net	043) 252-0968
	52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36길 4 청주 YWCA 1층 여성종합상담소	361-819	cj3008@hanmail.net	043) 268-3008

대전	53	대덕사랑상담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북로 36번길10(송촌동450-2) 송촌컨벤션 508호	306-813	iiss420@hanmail.net	042) 631-1004
	54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28	301-806	ywca3038@hanmail.net	042) 255-0004
	55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로 98, 2층	301-829	sd3999@hanmail.net	042) 712-1367
전남북제주권역 (18개소)						
지역	연번	상담소	주소	우편번호	E-MAIL	전화번호
전남	56	늘푸른상담센터	전라남도 나주시 중앙로 50 (성북동) 유성빌딩 3층	520-050	nj1366@hanmail.net	061) 332-1366
	57	담양인권지원상담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 18번길 2층	517-804	swan1139@naver.com	061) 381-1366
	58	무안여성상담센터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7번지	534-803	muan8823@hanmail.net	061) 454-1360
	59	보두마함께가는상담소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영수길 189	525-802	boduma1388@hanmail.net	061)324-1388
	60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 여수시 어항로 6	550-805	talk4001@daum.net	061) 666-4001
	61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라남도 순천시 서문성터길 104	540-050	scwhl@hanmail.net	061) 755-8033
전북	62	해남성폭력상담소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30	536-809	haenam2005@hanmail.net	061) 533-9181
	63	행복누리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로 83번길 5, 2층	530-831	mwomen99@hanmail.net	061) 283-4552
	64	군산성폭력상담소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구영 7길, (구)월명동사무소 1층	573-060	gsung1366@hanmail.net	063) 445-1366
	65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전라북도 김제시 금성로 53-1	576-804	sung1366@naver.com	063) 546-1366
	66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인정 2길 12-4, 전북노회회관 3층	560-838	svpcc@hanmail.net	063) 236-1366
	67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정읍성폭력상담소	전라북도 정읍시 수정동 충정로 273, 대울빌딩 5층	573-060	gsung1366@hanmail.net	063) 236-1366
광주	68	익산성폭력상담소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87 인산상공회의소 5층	570-955	iksung3999@hanmail.net	063) 834-1366
	69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77번길 추선회관 307호	502-732	kjwhl@hanmail.net	062) 363-0442
	70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816	503-834	click4050@hanmail.net	062) 521-1366
	71	인구협회 광주전남지회 성폭력상담소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7번지	534-803	muan8823@hanmail.net	062) 671-4050

제주	72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 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8길 32길	690-032	novawij@hanmail.net	064) 755-1366
	73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11길 3	690-814	sehyun717@hanmail.net	064) 748-3040

대구경북권역 (12개소)

지역	연번	상담소	주소	우편번호	E-MAIL	전화번호
대구	74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85, 아세아 빌딩 3층	706-816	lawdaegu@hanmail.net	053) 745-4501~2
	75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31, 헤림한의원 3층	705-023	esco11@nate.com	053) 471-6482~3
	76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대구광역시 서구 국제보상로 46길 16	703-848	mentor7979@hanmail.net	053) 566-1900
경북	77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봉황로 155번길 14	780-962	1515anna@hanmail.net	054) 777-1366
	78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길 41, 3층	730-080	gumi1388@hanmail.net	054) 463-1388
	79	로템성폭력상담소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766	712-903	lodem5276@hanmail.net	053) 853-5276
	80	새경산성폭력상담소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132-1	712-020	richanna@hanmail.net	053) 814-1318
	81	새김천성폭력상담소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로 158	740-973	kjs84980@hanmail.net	054) 437-6100
	82	칠곡종합상담센터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69-35	718-803	han-8290@hanmail.net	054) 973-8290
	83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림동 10번길 6-2	790-830	phwomen@hanmail.net	054) 275-7436
	84	칠곡종합상담센터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69-35	718-803	han-8290@hanmail.net	054) 973-8290
	85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경상북도 상주시 영남제일로 1368	742-860	pillglim@hanmail.net	054) 534-9996

부산, 울산, 경남권역 (17개소)

지역	연번	상담소	주소	우편번호	E-MAIL	전화번호
경남	86	거창성가족상담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193-40번지 거창문화원 3층	670-801	0559441828@hanmail.net	055) 944-1828
	87	경남여성회부설 성가족상담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10길 56 가고파오피스텔 505호	631-859	sangdamso8400@hanmail.net	055) 244-8400
	88	김해여성의전화부설 김해성폭력 상담소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422번길 34-5 201호	621-906	ghs6451@hanmail.net	055) 329-6451
	89	사천성가족상담센터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양로 126	664-807	gender0416@hanmail.net	055) 852-9040

경상남도	90	양산성가족상담소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대로 849 종합운동장주경기장 내 155호	626-767	yangsan0707@hanmail.net	055) 366-6676
	91	진주여성민우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로 9번길 15 현주빌딩 3층	660-992	femisangdam@hanmail.net	055) 747-1366
	92	진해여성의전화부설 진해성폭력 상담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11번길 16, 4층	645-320	jhwil1366@hanmail.net	055) 546-8322
	93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72번지	635-801	suwonhotline@hanmail.net	055) 521-1366
	94	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 상담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신월로42 토월복합상가 725호	641-838	chwhl@hanmail.net	055) 267-1366
	95	통영YWCA성폭력 상담소	경상남도 통영시 동충 1길 4, 2층	650-080	xhddudtjdvr@hanmail.net	055) 642-0233
부산	96	하동성가족상담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22 하동문화예술회관 1층	667-804	hadongssung@hanmail.net	070) 4131-1366
	97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 171 율곡빌딩 6층	607-804	woman-world@hanmail.net	051) 558-8832
	98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 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55번길 15(전포2동)	614-865	pwhl4344@hanmail.net	051) 817-6464 817-6474
	99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92(광안동)	613-810	women114@hanmail.net	051) 753-1377
울산	100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 상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25(남천동)	613-816	ingu1004@hanmail.net	051) 624-5584
	101	울산생명전화부설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13 삼성빌딩 505호	680-845	uslifecycle91@hanmail.net	052) 267-1366
	10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27, 2층	681-812	rkqjqtjdvr@hanmail.net	052) 245-1366

장애권역(24개소) ※ 전성형 미가입 상담소 3곳 포함

지역	연번	상담소	주소	우편번호	E-MAIL	전화번호
서울	1	꿈누리복지상담재활협회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일로 129길 35 태릉시장 에셈빌딩 208호	131-883	kssc91@hanmail.net	02) 902-3356
	2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대우베네시티 상가 410호	134-874	was1399@hanmail.net	02) 3013-1367
	3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02호	150-917	ss4466@hanmail.net	02) 3675-4465
	4	한사회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357 려산빌딩 지하층	157-200	kswpc11@hanmail.net	02) 3658-1366
인천	5	인천광역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 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옹천로 208번지 사회복지회관 707호	405-800	indisab78@hanmail.net	032) 424-1366
	6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37-10 107동101호	403-816	0325045479@hanmail.net	032)504-5479
경기	7	경원사회복지회부설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92 태평동라커뮤니티 303호	5461-825	withus3663@hanmail.net	031) 755-2526
	8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426, 태진빌딩 4층	480-865	daprc@hanmail.net	031) 840-9203
	9	의왕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 1길 34 꿈마을 상가 202호	437-813	seok9191@naver.com	031)462-1366
대전	10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전여성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서로 9, 월평빌딩 3층	302-845	duwkd8866@hanmail.net	042) 223-8866
	11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전지부 부설 한밭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778번길 130(가양동)	300-801	hanbat77@hanmail.net	042) 637-1366
충남	12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청남도 아산시 변영로 115번길 20-14 LK빌딩 201호	336-012	heejae5@hanmail.net	041) 541-1514
	13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 상담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 5길 4 두정프라자 301호	331-963	cdassd6500@hanmail.net	041) 592-6500
충북	14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청주여성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6번길 15-2 흥와상가 2층	360-050	hotsisters@hanmail.net	043) 224-9414
광주	15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82번길 8	503-030	1366kjdw@hanmail.net	062) 654-1366
제주	16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3길 1-4번지 4층	690-029	juwc0326@hanmail.net	064) 753-4980
대구	17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 장애인통합 상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비슬로 542길 12	704-838	tdaws@hanmail.net	053) 637-6057
	18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상북도 안동시 중앙로 60-1, 3층	760-240	sds1366@hanmail.net	054) 843-1366
경북	19	사)국제문화진흥원 부설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상북도 구미시 문장로 12길 18	730-909	yn1366@hanmail.net	054) 443-1366
	20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10길 56, 가고파오피스텔502호	631-859	5041sos@hanmail.net	055) 247-1366
부산	21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12-3 부산장애인회관4층	601-839	pdaws98@hanmail.net	051) 583-7735~6
울산	22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중앙길 104번지, 402호	689-855	ju2008mi@hanmail.net	052) 246-1368
전남	23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 장애인성폭력 상담소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361, 2층	530-840	younsl4767@hanmail.net	061) 283-4767
전북	24	사)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신봉 3길 6	560-855	happy1004org@hanmail.net	063) 223-3015

해바라기센터중앙지원단

지역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도메인/이메일
서울	서울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Place 3층)	02-735-7510	02-735-7536	www.womannchild.or.kr womannchild@stop.or.kr

※ 2015년 1월 1일부터 전국 34개 여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의 명칭이 해바라기센터로 통일하여 시행됩니다.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센터명	소재지	위탁병원	연락처	도메인/이메일
서울동부 (서울원스톱)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	경찰병원	02) 3400-1700 F. 02) 3400-1694	www.smonestop.or.kr seoulonestop@nph.go.kr
서울남부 (보라매원스톱)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보라매병원	02) 870-1700 F. 02) 870-1116	www.smsonestop.or.kr bbh9566@hanmail.net
부산동부 (부산원스톱)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부산의료원	051) 501-9117 F. 051) 506-4117	bsonestop.or.kr bsonestop1@naver.com
대구 (대구원스톱)	대구시 서구 평리로 157	대구의료원	053) 556-8117 F. 053) 556-5117	onestop.daegumc.co.kr dgonestop@daum.net
인천동부 (인천원스톱)	인천 동구 방축로 217	인천의료원	032) 582-1170 F. 032) 582-1179	www.iconestop.or.kr iconestop@hanmail.net
인천북부 (인천북부원스톱)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032) 280-5678 F. 032) 280-5677	www.iconestop.or.kr iconestop@hanmail.net
광주 (광주원스톱)	광주시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병원	062) 225-3117 F. 062) 234-3117	www.gjonestop.or.kr haydi2000@hanmail.net
경기북동부 (경기북부원스톱)	경기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의료원	031) 874-3117 F. 031) 872-4117	www.ggnonestop.or.kr ggnone-stop@hanmail.net
경기서부 (경기서부원스톱)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103	한도병원	031) 364-8117 F. 031) 365-5222	www.ggwonestop.or.kr ggwonestop@handoh.com
충북 (충북원스톱)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48	청주의료원	043) 272-7117 F. 043) 268-7117	www.cbonestop.or.kr cj-onestop@hanmail.net
충남 (충남원스톱)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병원	041) 567-7117 F. 041) 522-8117	www.cnonestop.or.kr cnone-stop@hanmail.net
전북 (전북원스톱)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병원	063) 278-0117 F. 063) 278-2117	www.jbonestop.or.kr jbonestop@hanmail.net
전남동부 (전남원스톱)	전남 순천시 순광로 221	성가롤로병원	061) 727-0117 F. 061) 727-9024	www.jnonestop.or.kr jnone-stop@hanmail.net
경북북부 (경북원스톱)	경북 안동시 태사2길 55	안동의료원	054) 843-1117 F. 054) 843-6117	www.gbonestop.or.kr gbonestop@nate.com
경남 (경남원스톱)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마산의료원	055) 245-8117 F. 055) 247-3117	gnonestop.or.kr gn1stop@hanmail.net
제주 (제주원스톱)	제주 제주시 도령로 65	한라병원	064) 749-5117 F. 064) 749-6117	www.jjonestop.or.kr 117stop@hanmail.net

해바라기센터-아동형

센터명	소재지	위탁병원	연락처	도메인/이메일
서울 (서울해바라기)	서울 마포구 마포구 백범로 23 (구프라자 7층)	연세의료원	02) 3274-1375 F. 02) 3274-1377	www.child1375.or.kr help@child1375.or.kr
대구 (대구해바라기)	대구 중구 동덕로 125 (5층)	경북대병원	053) 421-1375 F. 053) 421-1370	www.csart.or.kr ysf1375@hanmail.net
인천 (인천해바라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69 (한성빌딩 2층)	가천의대 길병원	032) 423-1375 F. 032) 432-1375	www.sunflowericn.or.kr isc1375@gilhospital.com
광주 (광주해바라기)	광주 동구 제봉로 57 (웰크리닉 4층)	전남대병원	062) 232-1375 F. 062) 232-1375	www.forchild.or.kr sunflower1375@hanmail.net
경기 (경기해바라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남로 7 (한화빌딩, 5층)	분당차병원	031) 708-1375 F. 031) 708-1355	www.sunflower1375.or.kr sunflower1375@sunflower1375.or.kr
충청 (충청해바라기)	충북 충주시 봉현로 222 (보성빌딩, 4층)	건국대 충주병원	043) 857-1375 F. 043) 857-1380	www.1375.or.kr csc1375@hanmail.net
전북 (전북해바라기)	전북 덕진구 백제대로 751 (사학연금관리공단, 2층)	전북대병원	063) 246-1375 F. 063) 247-1377	www.jbsunflower.or.kr jbsunflower@hanmail.net
경남 (경남해바라기)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병원, 지하층)	경상대병원	055) 754-1375 F. 055) 754-1378	www.savechild.or.kr gsc1374@hanmail.net

해바라기센터-통합형

센터명	소재지	위탁병원	연락처	도메인/이메일
서울 (서울통합)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병원 합춘회관, 지하층)	서울대병원	02) 3672-0365 F. 02) 3672-0368	www.help0365.or.kr help@help0365.or.kr
부산서부 (부산통합)	부산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동아대학병원, 지하층)	동아대병원	051) 244-1375 F. 051) 244-1377	www.bswomannchild.or.kr childforu@hanmail.net
울산 (울산통합)	울산 남구 월평로 171번길 13 (울산병원, 3층)	울산병원	052) 265-1375 F. 052) 244-6117	www.ussunflower.or.kr ussunflower@hanmail.net
대전 (대전통합)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병원	042) 280-8436 F. 042) 280-8434	www.djonestop.or.kr djonestop@hanmail.net
경기남부 (경기통합)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아주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아주대병원	031) 215-1117 F. 031) 216-1109	www.ggsunflower.or.kr ggsun1117@daum.net
경기북서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6-3 우리프라자 5층 501호	명지병원	031) 816-1375 F. 031) 816-1399	gnwsunflower.or.kr hyang0924@naver.com
강원서부 (강원통합)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병원 어린이병원, 지하2층)	강원대병원	033) 252-1375 F. 033) 254-1376	www.gwsunflower.or.kr gwchildsaver@hanmail.net
강원동부 (강원영동통합)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419번길 42 (강릉동인병원, 별관)	강릉동인병원	033) 652-9843 F. 033) 652-9839	www.sunflower6447.or.kr sunflower6447@hanmail.net
전남서부 (전남통합)	전남 목포시 영산로 623 (목포중앙병원, 별관5층)	목포중앙병원	061) 285-1375 F. 061) 285-1376	www.insunflower.or.kr 2851172@hanmail.net
경북동부 (경북통합)	경북 포항시 북구 대신로43 (선린병원, 5층)	선린병원	054) 245-5933 F. 054) 245-5949	www.gbsunflower.or.kr gbsunflower@hanmail.net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현황

〈2014년 12월 현재〉

no.	유형	시설명	운영주체	소재지
1	일반	열림터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2	일반	꿈밭의사람들	(사)한국 한아름복지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3	일반	푸른희망담쟁이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남구
4	일반	양지터	사회복지법인 새길공동체	부산광역시 연제구
5	장애	사랑의집	(사)부산여성 장애인연대	부산광역시 동구
6	장애	늘해랑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7	특별	나는봄심터	사회복지법인 미동	대전광역시 중구
8	일반	징검다리	사회복지법인 밝은미래복지재단	울산광역시 북구
9	일반	아인빌	사회복지법인 재인	대구광역시 남구
10	일반	다솜누리	여성민우회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북구
11	장애	셋터	(사)한국여성 장애인연합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남구
12	일반	수원 여성의쉼터	법률구조법인 수원 가정법률상담소	경기도 수원시
13	일반	의정부 사랑의쉼터	(사)YMCA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14	일반	하담	(사)고양파주 여성민우회	경기도 파주시
15	장애	목양의집	(사)한국목양복지회	경기도 남양주시
16	장애	소빛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신륵사	경기도 여주시
17	특별	미래꿈하우스	사회복지법인 에벤에셀	경기도 화성시
18	일반	베다니쉼터	법률구조법인 원주 가정법률상담소	강원도 원주시
19	일반	충주 여성케어센터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	충청북도 충주시
20	장애	모퉁잇돌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청주교구 사회복지회	충청북도 청주시
21	장애	어울림	사회복지법인 마곡	충청남도 아산시
22	일반	디딤터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23	일반	은혜의쉼터	사회복지법인 중도원	전라북도 군산시
24	일반	담쟁이쉼터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라남도 여주시
25	장애	해늘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라남도 목포시
26	특별	우리아이집	사회복지법인 범속	경상남도 창원시
27	특별	무지개쉼터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경상북도 김천시
28	일반	여성의쉼터	(사)YWCA 제주	제주도 제주시
*	공동생활자립	미들	사회복지법인 범속	경상남도 창원시
*	공동생활자립	꿈나래 (경상북도지원사업,비인가시설)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경상북도 구미시

성폭력피해자 법률지원 안내서

발행일 2014. 12.

발행 (사)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편집 방이슬, 양애리아, 최란
감수 김영미, 김정혜, 김차연, 차혜령, 천지선

자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후원 여성가족부

디자인 니나의 정원